



시보는 공무원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시보

제825호 2014. 07. 18. (금)

조 례

- 삼척시조례 제863호 삼척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
- 삼척시조례 제864호 삼척시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5
- 삼척시조례 제865호 삼척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 — 6
- 삼척시조례 제866호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7
- 삼척시조례 제867호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13
- 삼척시조례 제868호 삼척시 시세 강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 16
- 삼척시조례 제869호 삼척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19
- 삼척시조례 제870호 삼척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 22
- 삼척시조례 제871호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 26
- 삼척시조례 제872호 삼척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 28
- 삼척시조례 제873호 삼척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 — 39
- 삼척시조례 제874호 삼척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40

공 람										
--------	--	--	--	--	--	--	--	--	--	--

발행 : 문화공보실 (전화 : 570-3221, FAX : 570-3132)

규 칙

- 삼척시규칙 제456호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42
- 삼척시규칙 제457호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 92
- 삼척시규칙 제458호 삼척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 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 — 97
- 삼척시규칙 제459호 삼척시 시세 부과 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 — 103
- 삼척시규칙 제460호 삼척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 115
- 삼척시규칙 제461호 삼척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 127
- 삼척시규칙 제462호 삼척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37
- 삼척시규칙 제463호 삼척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38

훈 령

- 삼척시훈령 제239호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등 시행규정 일부개정규정 — 140
- 삼척시훈령 제240호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 152

고 시

- 삼척시고시 제2014-96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 170
- 삼척시고시 제2014-98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171
- 삼척시고시 제2014-99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 173

공 고

- 삼척시공고 제2014-455호 삼척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 보상계획 공고 — 174

제170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4. 7. 11.)에서 의결된 삼척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2014년 7월 18일

삼척시 조례 제863호

삼척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삼척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3”을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직무”라 함은”을 “““직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의정활동비”라 함은”을 “““의정활동비”란”으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를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유족”이라 함은”을 ““유족”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장애”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조제5호 중 ““상해”라 함은”을 ““상해”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공무상재해 인정기준(총무처 훈령)”을 “국가에서 정한 공무상재해 인정기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도의원 당해연도”를 “강원도의회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 해당연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시장”을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영 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 단서 중 “다만, 시”를 “다만, 삼척시”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회무를 통할한다”를 “보상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9조제3항 본문 중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1조 중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을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70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4. 7. 11.)에서 의결된 삼척시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2014년 7월 18일

삼척시 조례 제864호

삼척시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삼척시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를 “제15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로, “200명”을 “150명 이상”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70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4. 7. 11.)에서 의결된 삼척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2014년 7월 18일

삼척시 조례 제865호

삼척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

삼척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개업 중에 있는 변호사”를 “변호사”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고문변호사는 시”를 “고문변호사는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을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위·해촉일”을 “위촉일 및 해촉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70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4. 7. 11.)에서 의결된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2014년 7월 18일

삼척시 조례 제866호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전략산업국, 안전행정국”을 “미래전략국, 자치행정국”으로 한다.

제4조의2의 제목 “(전략산업국에 두는 과)”를 “(미래전략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미래전략국에 미래전략과, 에너지산업과, 자원개발과, 특화산업과를 둔다.

제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략산업국”을 “미래전략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략산업육성기본계획”을 “미래전략육성 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4. 태양광발전 테마파크 추진
- 5.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유치
- 6. 친환경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지원

제4조의2제2항제7호 중 “유치·지원”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8. 종합발전단지 지원에 관한 사항
- 9. 탄광개발사업 증장기 계획 수립
- 10. 플라즈마 석탄가스화 발전소 유치
- 11. 경제자립형개발사업 및 지역연고산업 육성
- 12. 와우산 해양관광리조트타운 조성 지원
- 13. 종합메디컬 타운 조성 및 치매전문요양시설 건립
- 14. 인재육성에 관한 계획수립 및 교육경비 지원

제5조의 제목 “(안전행정국에 두는 과)”를 “(자치행정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안전행정국에 총무과, 안전총괄과, 정보자원정책과”를 “자치행정국에 자치행정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장애인 복지”를 “장애인복지, 가족, 드림스타트”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기업투자지원과”를 “안전총괄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7호까지로 각각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기업지원, 일자리 지원,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 7. 인적·사회적 재난관리 총괄 및 민방위에 관한 사항

제15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문화예술센터

제15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대이동굴관리소
 - 가. 대이동굴관리소 행정의 종합조정 및 사무에 관한 사항
 - 나. 환선굴, 대금굴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다. 대이리군립공원지역 및 동굴·부대시설의 보호 유지관리
 라. 관광객 유치 및 안내
 마. 그 밖에 관리소 시설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7. 해양관광시설관리소

가. 해양레일바이크 체험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나. 해신당공원, 황영조기념공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이사부공원 및 장미공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한시기구) 미래전략산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미래전략국”의 존속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사업추진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삼척시 지역발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전략산업국장”을 “미래전략국장”으로 하며, “지역개발사업단장”을 “자원개발과장”으로 한다.
- ② 삼척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 ③ 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제2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 ④ 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 제4조제5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 제5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 ⑤ 삼척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 ⑥ 삼척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 ⑦ 삼척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4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 ⑧ 삼척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 ⑨ 삼척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 ⑩ 삼척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 ⑪ 삼척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 ⑫ 삼척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 ⑬ 삼척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 ⑭ 삼척시 시민제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5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 ⑮ 삼척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 제8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 제9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 제11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⑯ 삼척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⑰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문화시설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를 “문화예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별표 2] <개정 2014.7.18.>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3조제2항 관련)

사업소명	위 치
• 상하수도사업소	삼척시 중앙로 296
• 평생학습관	삼척시 청석로3길 16-41
• 내수면개발사업소	삼척시 근덕면 초당길 234
• 문화예술센터	삼척시 엑스포로 45
• 대이동굴관리소	삼척시 신기면 환선로 800
• 해양관광시설관리소	삼척시 근덕면 공양왕길 2

제170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4. 7. 11.)에서 의결된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2014년 7월 18일

삼척시 조례 제867호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844명”을 “85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832명”을 “840명”으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별표 3”을 “정원은 별표3”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정원”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으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정원 중 한시기구 “미래전략국”의 지방4급 정원 1명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으로 일반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와 이 조례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2]<개정 2014.7.18.>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비율	100%	0.8% 이내	6.0% 이내	24.5% 이내	29.5% 이내	29.0% 이내	9.8% 이상	0.4% 이내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계	연구관	연구사	계	지도관	지도사
비율	100%	15%이내	85%이상	100%	15%이내	85%이상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구분	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율	100%	0%이내	50%이상	50%이내	0%이내	0%이내

비고 :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채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3]<개정 2014.7.18.>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유면동
총 계	852					
정무직 계	1					
일반직 계	821					
4급	4	4				
4 ~ 5급	1			1		
5급	47	24	3	2	6	12
6급 이하 소계	766					
전문경력관 소계	3					
별정직 계	1					
6급상당 이하 소계	1					
연구직 계	4					
연구관	0					
연구사	4					
지도직 계	25					
지도관	3			3		
지도사	22					

제170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4. 7. 11.)에서 의결된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 장

2014년 7월 18일

삼척시 조례 제868호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삼척시세의 감면·추징 등”을 “삼척시 시세의 감면”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를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여”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로, “감면신청 하는”을 “감면 신청하는”으로 하고, “위하여 다음”을 “위하여 법 제1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임야)를 “부동산(임야)로 한다.

제7조 중 “3년간”을 “5년간”으로 한다.

제8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92조의2”를 “법 제92조의2”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를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 도세를 우선 공제하고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시세에서 공제한다”로 한다.

제12조 중 “「지방세법」 제13조제3항”을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을 “영 제126조제1항”으로, “감면신청서를”을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로 한다.

제16조 전단 중 “지방세”를 “시세”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제48조”를 “제127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0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4. 7. 11.)에서 의결된 삼척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2014년 7월 18일

삼척시 조례 제869호

삼척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삼척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11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란 시장이 통·리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제4항 후단 중 “리·반장”을 “리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보통우편 송달부)”를 “(일반우편 송달부)”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보통우편의 방법으로”를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경우”로,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하며, 같은 조 후단 중 “우편물접수인”을 “통신일부인”으로 한다.

제11조 중 “채납”을 “채납한”으로, “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채납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한다.

제12조 중 “순서로”를 “순서로 징수하고, 도세나 시세 중에서 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목적세를 우선”으로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채납한 경우로서 그 채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하기 10일 전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무관청이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결정하면 해당 납세자에게 자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내)”를 “내의 경우에 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새로이”를 “새로”로, “당초에”를 “이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등 사유와”를 “등의 사유가 있거나”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공탁 등)”을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공탁하거나 또는 시금고”를 “시금고”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8조의 제목 “(시세의 수납)”을 “(세무공무원의 수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지방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징수유예 등의 신청 및 처리)"를 "(징수유예 등의 결정 및 처리)"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요구여야"를 "요구하여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6호 중 "필한"을 "마친"으로 한다.

제32조 단서 중 "공동사용자"를 "공유자"로 한다.

제34조 중 "법 제95조제1항제1호에서 성실납부자란"을 "법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실납부자"란"으로, "제외한다)"를 "제외한다)으로"로 한다.

제38조제2호 중 "같은 조제5항"을 "영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를 "고액·상습체납자"로 한다.

제52조제1호 중 "질병 기타"를 "질병, 그 밖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금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0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4. 7. 11.)에서 의결된 삼척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 장

2014년 7월 18일

삼척시 조례 제870호

삼척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삼척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없으면 「지방세법」, 「삼척시 시세 기본 조례」"를 "없으면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삼척시 시세 기본 조례」"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를 "법 제53조"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균등분의"를 "법 제78조제1항의 주민세 균등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개인

제6조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동 지역 : 3,600원

나. 읍면지역 : 2,000원

제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 : 법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3. 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 : 법 제78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7조제1항 중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를 “같은 법 제81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8조 다음에 절 번호 및 절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0조 및 제11조를 같은 절 제9조 및 제10조로 하고, 제9조(중전의 제10조) 및 제10조(중전의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절 종업원분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사업소를 새로 신설하였을 때
-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변경된 때

제9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1조(중전의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서 같은 조 제3항까지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1조(기존의 제9조)앞의 절 제목 및 절 번호를 삭제한다.

제11조(기존의 제9조) 다음의 절 제목 및 절 번호를 삭제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의 제목 “(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를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의 고시)”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도시지역분)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6조 중 “주택”을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으로, “5만원”을 “10만원”으로, “부과·징수한다”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후단 중 “「강원도 도세 조례」 제5조”를 각각 “다만, 「강원도 도세 조례」 제5조”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강원도 도세 조례」 제5조”를 “다만, 「강원도 도세 조례」 제5조”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강원도 도세 조례」 제5조”를 “다만, 「강원도 도세 조례」 제5조”로 한다.

제24조 중 “법 제127조”를 “법 제127조제3항”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를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0회 삼척시의회(입시회) 제2차 본회의(2014. 7. 11.)에서 의결된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 장

2014년 7월 18일

삼척시 조례 제871호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해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해당액으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제8호 중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70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4. 7. 11.)에서 의결된 삼척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2014년 7월 18일

삼척시 조례 제872호

삼척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가구에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시민의 연료비 부담과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 시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3. “단독주택 등”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과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4.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경제성이 미달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선부과요금을 말한다.
5. “신청자”란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구역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한 세대를 말한다.

6. “보조사업자”란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세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원대상 등) ① 보조금 지원대상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고시한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이하 “시설분담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경제성 미달지역으로 사업자가 안전 등 제반여건을 분석한 후 도시가스의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내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신청세대로 한다.

② 제2조의 “보조사업자”(보조금 청구와 수령 등을 위임한 경우에는 “사업자”를 “보조사업자”로 본다)에게 조례에 정한 범위에서 지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순수 영입·업무 목적의 공급관 설치 신청자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규모)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도지사가 고시한 시설분담기준에서 정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퍼센트를 지원하되, 세대당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에는 시설분담금 전액을 지원하되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과 공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자의 도시가스공급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 선정과 절차) ① 제6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하는 구역에서는 대표자를 선정후 신청자의 서명을 모두 받아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삼척시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상사업의 적정성, 관계법 지촉 여부, 사업내용과 공사부담금을 포함하는 사업비의 규모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후 결과를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원사업을 다수가 신청하여 지원 예정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지원예정 금액이 낮은 공급 구간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예정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사용신청자 수가 많은 공급구간을 우선 지원하며, 이에 대한 결정은 위원회에서 한다.

제8조(보조금 지급) ① 제7조에 따라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도시가스 관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관계서류와 현지조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보조금 신청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 사용범위) 보조금은 지급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자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등 관련서류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설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2. 지원금 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삼척시의회가 추천하는 삼척시의회 의원
2. 도시가스관련 관계기관 등의 부서장
3. 도시가스관련 전문가와 교수
4. 시민단체 대표
5. 도시가스 업무관련 공무원

제13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씩 두되, 간사는 도시가스공급업무 담당이 하고, 서기는 도시가스공급업무 주무관이 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심의안건 보고 등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서기는 회의록 작성 등 간사의 업무를 보좌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장기입원 하였거나 장기출타 등으로 위원회 참석이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려울 때

3. 도시가스관련 업무에 해당하는 직위·직책을 상실했을 때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위촉의 해제를 의결했을 때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보조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미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관련법령과 조례의 보조금 지급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

제17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사업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구역별 준공 후 3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과 보조사업 수행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①단위 사업명		
	②성명(대표자)	③생년월일	
	④현 주소 (전화 :)		
⑤가구수(세대수)			
⑥공급받을 장소		공사시점 : 공사종점 :	
⑦배관연장		M	
⑧ 도시가스공급확인		상기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예정) 지역임을 확인합니다. (인)	
「삼척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뒷면)

도시가스 공급신청 세대내역

일련 번호	신청자	생년월일	주소	건물 소유자	계량기 설치대수	지원금액 (천원)	서명

※ 여백 부족 시 별지 작성

(뒷면)

도시가스 공사 보조금 교부신청 내역

일련 번호	신청자	생년월일	주 소	계량기 설치대수	지급 신청금액	계좌번호 (보조금 수령 위임 확인)	확인

※ 여백 부족 시 별지 작성

(별지 제3호서식 - 첨부서류)

위 입 장

피위임자

- 주 소 :
- 법인명 :
- 대표자 :

금 액 : 금 원정 (₩)

위임내용 :
 ○○○○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사업
 주민 분담금 중 보조금 전액

위 기재사항과 금액을 위임함에 있어 청구 및 수령에 관한 권한 일체를 피위임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단위사업명 :
 주 소 :
 성 명 : (인)

삼척시장 귀하

제170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4. 7. 11.)에서 의결된 삼척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2014년 7월 18일

삼척시 조례 제873호

삼척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삼척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농기계이동순회수리반”을 “농기계순회수리반”으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10만원”을 각각 “20만원”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망실훼손)”을 “(분실훼손)”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망실 또는”을 “잃어버렸거나”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70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4. 7. 11.)에서 의결된 삼척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2014년 7월 18일

삼척시 조례 제874호

삼척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삼척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치) 삼척시 농기계임대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은 삼척시 농업기술센터내에 두며,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소를 둔다.

1. 남부분소 : 삼척시 원덕읍 산양서원1길 16-36
2. 서부분소 : 삼척시 미로면 강원남부로 3922

제3조제1호 중 ““임대사업”이라 함은 삼척시”를 ““임대사업”이란 삼척시 (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임대농기계”라 함은 삼척시”를 ““임대농기계”란 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농기계 임대사용료”(이하 “임대료”라 한다)라 함은 삼척시”를 ““농기계 임대사용료”(이하 “임대료”라 한다)란 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사용자”라 함은 삼척시”를 ““사용자”란 시”로, “삼척시”를 “시”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사업”을 “사업장”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조례·규칙 심의회(2014. 07. 09.)에서 의결된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2014년 7월 18일

삼척시 규칙 제456호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의 제목 “(전략산업국)”을 “(미래전략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미래전략과장·에너지산업과장·특화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자원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조의 제목 “(안전행정국)”을 “(자치행정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무과장·정보자원정책과장·세무과장·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안전총괄과장”을 “자치행정과장·세무과장·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사회복지과장”으로,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민원봉사과장”으로,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사회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봉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를 “지방시설사무관으로”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기업투자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를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로 한다.

제13조 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을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대이동굴관리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문화시설관리소장”을 “문화예술센터소장”으로, “지역개발사업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를 “해양관광시설관리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3,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삼척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전략산업국장”을 “미래전략국장”으로 하고,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며, “전략산업과장, 총무과장”을 “미래전략과장,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② 삼척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문화시설관리소”를 “문화예술센터”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24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27조제5항제1호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연락반 : 자치행정과 문서 및 통신업무 담당 직원으로 편성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③ 삼척시 기록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하고,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경) 안전행정국장 (부) 총무과장”을 “(경) 자치행정국장 (부)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④ 삼척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⑤ 삼척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각각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⑦ 삼척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⑧ 삼척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⑨ 삼척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총무과장, 정보자원정책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⑩ 삼척시민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⑪ 삼척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

⑫ 삼척시 공공간행물 광고표시에 따른 광고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총무과”를 각각 “자치행정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

⑬ 삼척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⑭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문화시설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를 “문화예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중 “문화시설관리소장”을 각각 “문화예술센터소장”으로 한다.

[별표 1]<개정 2014. 07. 18.>

읍·면·동장의 직급 (제15조 관련)

기관별	직위	직급
도계읍사무소	도계읍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원덕읍사무소	원덕읍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근덕면사무소	근덕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하장면사무소	하장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노곡면사무소	노곡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미로면사무소	미로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가곡면사무소	가곡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신기면사무소	신기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남양동주민센터	남양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성내동주민센터	성내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교동주민센터	교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정라동주민센터	정라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별표 3] <개정 2014. 7. 18. >

본청 실·과장 사무분장표(제6조 관련)

실·과명	분장사무
기획감사실	1. 시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중장기 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조정 3. 시정주요업무 및 심사평가 시행계획 수립 4.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5. 시정발전위원회 운영 6. 중앙 및 도정 주요업무심사평가 7. 광역권 행정 운영관리 8.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도지사 지시사항 관리 9. 종합활동대책 시달 10. 시정 백서 발간 및 특수시책 개발관리 11. 대통령, 도지사, 시장 공약사항 처리 12. 시의회 의정지원 전반 13. 각종 위원회 조정관리 14. 투자심사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15. 득표관리제 운영평가 16. 시정종합평가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7. 역점시책사업의 심사평가 18. 혁신분권에 관한 업무 추진 19. 국제자매결연 업무추진 20. 국제교류업무의 협력지원 21. 공무원 등 제안제도 운영 및 행정제도 개선 22. 국제통상협력에 관한 사항 23. 외국관련 기병물 및 조형물 관리 24.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 25.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의 감독 26. 예산배정집행 및 절감운영관리 27. 예비비 관리 28. 시 재정 운영 총괄 기획 조정 29. 경영수익사업의 기획 조정 30. 전시장방재정에 관한 사항 3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32. 향토학사 운영관리업무 33. 지방재정 투명자 심사관리 34. 지방교부세 및 지방 양여금 관리 35. 예산전용, 이월, 이용, 이체 등에 관한 업무 36. 지방재정 조기 집행관리

실·과명	분장사무
	37. 국·도비 보조금 관리 38. 지방재정 분석 및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 39. 사업별 예산제도 운영 40. 지방채 및 기금운용관리 41. 지방공기업의 육성지도·감독 42. 지방공사,공단 설립업무에 관한 사항 43. 시설관리공단 지도·감독 44.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45. 행정감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46. 상급기관 종합감사 수감 47. 정기 감사에 따른 징계사항 처리 48. 정기 및 수시감사, 결과처리 49. 감사관련 기록 관리 및 통계 분석 50. 공무원의 비위조사 처리 51. 특명사항 처리 52. 민원, 진정, 투서 등의 조사처리 53. 민원사무처리상황 검열 54. 상급기관 이첩 및 다수인관련 민원처리 55. 언론보도사항 조사 및 동향보고 56. 공무원 복무기강 및 자율사정 추진 57. 기동 감찰반 운영 58. 소관사항에 대한 징계의결 및 소청에 관한 사항 59.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결과 처리 60. 부패방지계획 수립 및 시행 61. 선물신고 업무 62.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승인 63. 삼척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64. 법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 65. 조례규칙제정 및 개폐(안)심사, 공포 66. 훈령, 예규(안) 심사 67. 법령, 자치법규 질의해석 지원 68. 법령집, 관보에 관한 사항 69. 소송, 행정심판 사무의 조정 및 통제 70. 고문변호사 운영 71. 공고, 고시 업무에 관한 사항 72. 국가비상사태의 전시법령에 관한 사항 73. 채무불이행자 명부관리 74. 각종 센서스, 통계조사 및 작성 75. 기본통계의 정비 76. 통계자료의 수집 및 분석

실·과명	분장사무
	77. 통계 간행물의 발간 78. 기타 통계 및 법제, 소송업무 관련사항 전반 79. 동.서.남해안 발전특별법 시행에 관한 사항
문화공보실	1. 지방문화예술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지방문화예술단체, 문화원 등록 및 지도 육성 3. 시사편찬 4. 전통사찰 및 향교등 관련업무 5. 전통 제례행사 관련업무 6. 종교 단체 관련업무 7. 문화재의 지정, 해제, 보호구역 조정 및 관리 8. 향토문화의 발굴 육성 9. 문화재 매매업 지도단속 10. 각종문화단체 보조금 관리 11. 매장문화재관리 및 천연기념물 관리 12.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13. 축서우 운영관리 14. 강원의 얼 선양사업 15. 문화재 지표조사 및 문화재청 소관사무 16. 축서문화재 관련 업무 17. 전적기념물(탑, 비) 보조관리 18. 지명조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9. 지명위원회 및 지명심의위원회 운영관리 20. 저작권에 관한 사항 21. 출판 및 인쇄등록에 관한 사항 22. 공연신고, 공연자, 공연장 등록관리 및 지도감독 23. 음반, 비디오물, 게임등에 관한 업무 24. 도서관 운영관련 예산확보 및 도서구입 25. 도서관 신.중축에 관한 사항 26. 예술지원 및 행사추진에 관한 사항 27. 기타 문화 예술에 관한 사항 28. 정보행정 종합기획 29. 시보건행 30. 시책에 관한 여론조사 31.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사항 32. 공보통계관리 33. 분청 행정방송 및 시청각 기자재 관리 34. 전시 공보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5. 신문, 방송 보도사항의 반응과 분석 36. 시정 종합 보도자료 작성 및 제공 37. 홍보자료 수집 및 발간

실·과명	분장사무
	38. 홍보매체 이용계획 수립 시행 39. 시청홍보 사진제작 및 배포 40. 방송, 인터뷰 자료 작성 및 배포 41. 영상홍보를 제작 배포 42. TV 난 시청 사업추진 43. 시청 광고 및 선전물 제작관리 44. 기타 공보에 관한 사항 45. 체육행정 종합계획수립추진 46. 체육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47. 전국 및 도 규모 체육행사 유치지원 48. 시체육회 운영지원 49. 핸드볼 실업팀 운영지원 50. 체육시설업 신고등록 및 운영관리 51.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52. 직장 체육활동 지원 53. 시민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4. 생활체육진흥지원에 관한 사항 55. 생활체육 협의회 지원 및 감독 56. 국민건강생활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수립(등산 등 건전라이프스포츠 포함) 57. 기타 체육 및 건전생활에 관한 사항
미래전략과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조정 2. 미래산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수정) 3. 원자력발전소 관련 제반업무 추진 4. 소방방재산업 클러스터 구축 5. 소방방재산업단지 조성 및 활성화 6. (재)강원테크노파크 방재산업단 운영·지원 7. 손실보상업무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 8. 이주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9. 제반 인.허가 업무 지원 10. 개별임지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1. 소방방재산업단지 분양 촉진 등 마케팅 활성화 12. 실화재시험 연구센터 운영지원 13. 태양광발전 테마파크 추진 14.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유치 15. (주)세계광엔텍 관련 사후처리 업무 16. 광태지구 공장부지 관련 업무
에너지산업과	1. 친환경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지원 2. PNG 상척 터미널 유치사업 3. 종합발전단지 건설사업 관련 보상 등 행정지원 4.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관리 및 집행

실·과명	분장사무
	5. LNG 건설사업 관련 보상 등 행정지원 6. 호산항 국가관리항 지정 개발 7. 삼척 LNG 및 발전소 주변 연관산업 유치 8. 신발전축전지구 및 개발계획 수립 및 지원 9. 산업단지 지정 행정절차 이행 및 업무 지원 10. 사업부지 확보 협의 및 이주대책 추진 11. 어업권 보상 생계대책 추진 12. 산업단지내 인허가 업무의 지원
자원개발과	1.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업무 지원 2. 블랙밸리 컨트리클럽(주) 관련 업무 3. 탄광지역개발기금운영 및 집행관리 4. ㈜강원랜드 이사회 등 협력업무 추진 5. 탄광지역개발사업 중장기 계획수립 및 예산집행관리 6.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및 사업 추진 7. 하이원 추추파크 지원 8. 비축무연탄 기금 운용사업 9. 폐광지역 대체산업육성 10. 플라즈마 석탄가스화 발전소 유치 11. SNG/IGCC생산지 유치.조성 12. 도계캠퍼스 특례입학 추진 및 특수학교 유치 13.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유리조형 테마파크) 14. 지역연고산업(유리공예) 육성사업 추진 15. 광산근로자 복지센터 시설관리 16. 폐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17. 육백산 리조트 종합개발사업 18. 삼포지구 종합개발사업 19. 도계 진규폐 복지회관 건립·운영 관리
특화산업과	1. 와우산 해양관광리조트타운 조성 지원 및 각종 인·허가 사항 2. 종합메타럴 타운 조성 및 치매전문요양시설 건립 3. 기초과학연구원 우주입자연구센터 조성 지원 4. 지역특화산업의 발굴, 육성 및 지원 5. 해상로프웨이 및 해양레포츠 시설 조성 6. 요트 면허시험장 운영지원 및 요트시설 종합추진 7. 인제육성에 관한 계획 수립 및 교육경비 지원 전반기 8. 마이스터고 육성지원 및 특수학교 유치 9. 도계지구 학교 재구조화 사업지원 10. 삼척고 이전 사업 및 명품고 육성 발전 11. 참살기 지역(마을) 공동체 등 지역활성화 사업 추진 12.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지역혁신체계 구축 13. 지역특화발전특구 특례법에 의한 특구 지정

실·과명	분장사무
자치행정과	1. 국 소관업무의 총괄 조정 2. 각종행사 및 의전, 의식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의 복무관리 4. 시기 관리 5. 보안업무 6. 직장교육 7. 직원 출장 및 당직 근무에 관한 사항 8. 공인관리 9. 각종 공인신조, 개각의 승인 및 관리 10. 공무원 및 민간인 포상업무 11. 공무원 명찰제작 및 관리 12. 청우회 운영 및 구내식당 관리 13. 사무인계 인수 14. 직원원례조회 15. 시정종합일지 기록관리 16.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및 직장예비군중대 운영 17.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18. 전시 자체행동 질차 및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19. 전시 기관 소산 및 이동에 관한 사항 20. 전시 주민 및 차량통제 관한 사항 21. 문서통제 및 기록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2. 문서접수 분류 및 발송 23. 각종 공문서의 발간통제 24. 편찬문서의 보존관리 25. 발간실 운영 26. 행정사무의 관리개선 27. 사무 자동화 관리 28. 기록문서의 보존관리, 전산화 업무 29. 행정자료실 및 도서관리 30.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사항 31. 정보공개협의회 구성 및 운영 32. 그 밖의 국,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3.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 34. 읍.면.동 행정 지도 감독 35. 읍.면.동 행정 실적 심사 36. 읍.면.동 공무원의 소집통제 및 읍.면.동정 연가, 병가, 휴가 승인 및 복무관리 37. 통.리.반장에 관한 사항 38. 반상회 운영 및 건의 사업 지원 39. 명예시민에 관한 사항 40. 삼척 향토장학재단 운영

실·과명	분장사무
	41. 고객만족행정 및 행정서비스 현장제 운영
	42. 견문보고제 및 시청아이디어 운영
	43. 여론 대화 행정 및 반상화 운영 관리
	44. 각종 동향관리 및 지역안정대책
	45. 적십자 회비 수납 지원
	46. 대민행정 시책 추진
	47. 선거 및 국민투표 사무
	48. 시장 지시사항 관리 및 기타 시책사업
	49. 간부회의 운영
	50. 새마을 조직 육성지도
	51. 새마을금고 감독에 관한 사항
	52. 빠르게살기운동 지원업무
	53. 사회진흥 업무계획 수립 및 추진(국민운동분야)
	54.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
	55. 시민의 날 및 도민의 날 운영
	56. 이동 시민의 시장 운영
	57. 출향인사 삼척사랑 운동추진
	58. 학생 시정 현장체험
	59. 비영리단체에 관한 사항
	60. 국, 도, 시정 주요 시책사업 추진
	61. 도정 상담위원 운영
	62. 지식행정시스템(KMS) 운용
	63.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및 과거사진실규명 신고 및 접수
	64. 사무분장, 전결규칙에 관한 사항
	65.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
	66. 기구 및 직제, 정원관리
	67. 공무원 임면 및 징계
	68. 공무원 현원 관리
	69. 공무원 보수 및 연금에 관한 사항
	70. 공무원 관계증명 발급
	71. 인사.징계위원회 운영
	72.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근무성적 평정)
	73.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허가
	74. 공무원 직무 교육훈련
	75. 전서 지방행정에 관한 사항
	76. 공직자 병력사항 신고 업무
	77.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출결 관리
	78. 인사행정 시스템 관리
	79. 인사풍계 관리
	80. 퇴직자 공로연수 및 퇴임행사에 관한 업무

실·과명	분장사무
	81.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82. 공무원 4대보험 업무
	83. 공무원 연금, 학자금, 행정공제회에 관한 업무
	84. 기타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85. 공무원 노조 관련 사항
	86. 단체 교섭, 협약관련 매뉴얼 운영
	87. 직원 추생복지 및 체육, 동호회지원 등에 관한 사항
	88. 공무원 사기 진작 관리,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노사 관련 사항
	89. 기록관 시스템 운영
	90. 정보화 추진계획 수립 및 조정
	91. 정보화 업무추진지도 및 평가
	92. 전산 전문요원 관리 및 교육 훈련
	93. 전산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94. 정보화 상설교육장 관리 운영
	95. 정보화 기기 도입에 관한 사항
	96. 행정정보화 종합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97. 전산기계실 운영 및 관리사항
	98. 전산기기 및 부대장비의 유지 보수
	99. 정보화 소프트웨어 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100. 지역정보화 촉진위원회 운영관리
	101. 정보화 마을 사업에 관한 사항
	102. 주민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103. 주민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04. 지역정보화 계획 수립 및 추진
	105. 지역 정보화 인프라 기반 구축
	106.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107. 전자결재시스템 운영 관리
	108. 기록관시스템 구축 관리
	109. 기타 정보화에 관한 사항
	110. 행정정보통신 발전 종합계획 수립
	111. 행정정보통신망 종합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112. 행정정보통신 시설 개선 계획 수립 시행
	113. 통신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114. 보안장비 운영 관리
	115. 정보통신기기 도입에 관한 사항
	116. 건축물 정보통신공사의 사전용 검사업무
	117. 행정정보망(LAN) 구축 및 운영 관리
	118. 지방행정 정보망 운영관리
	119. 방화벽 시스템 운영관리
	120. 행정전화교환시설 운영 및 관리

실·과명	분장사무
	121. 행정정보통신 장비,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122. 각종 정보통신회선의 통합관리 123. 정보통신실 운영관리 124. 화상회의실 운영 125. 교환실, 발송실 운영 126. 행정발송시설 유지관리 127. 각종 통신공사 설계, 감독 업무에 관한 사항 128. 지진해일 경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29. 민방위 경보망 구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30. 통합경보, 방송통제시스템 운용관리 131. 기타 행정정보통신 업무에 관한 사항
세무과	1. 지방세관련 조례, 규칙, 제.개정 2. 지방세정 주요시책 추진 3. 지방세관련 위원회 운영관리 4. 세수추계(목표액 설정) 및 심사분석 5.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지역개발세 부과(가산금/중가산금 징수결정 포함) 6. 지방세 전산운영관리 및 정보화 추진 7.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관련 업무 추진 8. 개별.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발급관리 9. 지방세제 증명 발급관리 10. 체납자 은닉재산 발굴 및 체납제분 11. 체납차량 변호판 영치업무추진 12. 체납액 징수계획 수립 및 운영 13. 각종 징수현황보고서 작성관리 14. 결손처분 15. 관허사업제한(면허취소 요구) 추진 16. 체납자 정보제한 등록 및 금융 거래정보업무 운영 17. 체납차량 인터넷 공매추진 18. 체납자 예금 및 직장조회 업무추진 19. 체납자 채권(부동산, 차량, 기타) 확보관리 20. 부동산 공매 21. 교부청구 및 배당금수령 22. 고액, 고질체납자 형사고발 및 기타 체납처분 23. 영수원부 운영 및 관리 24. PDA관리 및 운영 25. 지방세 특속장 발부 26.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업무추진 27. 체납자료 행정자치부 자료전송 및 관리 28.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 29. 개인회생 및 소비자 파산관리

실·과명	분장사무
	30. 지방세 전산징수부 운영 31. 지방세입 일일 결산 32. 지방세 세입 일계표 소인 작업 33. 지방세 월보 및 결산서 작성 34. 국세 월보 및 결산서 작성 35. 국세 일반회계 채권 결산서 작성 36.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 운영 37.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운영 38. 지방세 전자납부제 운영 39. 지방세 전자금융 납부제 운영 40.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제 운영 41. 면허세 과징업무 추진 42. 시금고 계약, 감독 관리 43. 유희자금 관리(예탁금) 44. 자금배정 및 지방채권 관리 45. 시세입금 공급관리 46.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오납금지급 및 정리 47. 수입증지 출납관리 48. 시세입금 총괄결산 49. 세외수입 일일결산업무 추진 50. 세외수입 전산 수납 소인 51. 세외수입 체납 총괄관리 52. 세외수입 월보 및 분기보 작성 53.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총괄 관리 54. 국특회계 수납 및 부가가치세 수납 55. 수납대행점 및 자출대행점 계약, 감독관리 56. 공공예금 이자수입금 관리 57. 채권현재액 보고서 작성 58. 국.도비 보조금 착금관리 59. 지방교부세 착금관리 6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착금관리 61. 세외수입 세입예산액 관리 62. 세외수입 전산징수부 관리 63.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계획수립 추진 64. 세외수입 연감작성 65. 지방세 세무조사 업무 추진 66. 지방세 이의신청 업무 추진 67. 지방세 과세전적부 심사 청구 업무 추진 68. 지방세 심사청구 업무 추진 69. 지방세 소송업무 추진

실·과명	분장사무
	70.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 71. 주택분 재산세 부과(가산금/증가산금 결정 포함) 72. 건물분 재산세 부과(가산금/증가산금 결정 포함) 73. 토지분 재산세 부과(가산금/증가산금 결정 포함) 74. 재산조회 회신업무 전반 75. 건축물 및 토지 현황조사(건축, 증축, 개수) 76. 주택 및 건축물 소유권이전 등 변동자료 정리 77. 소유권 변동사항 정리(주택, 건물, 토지) 78. 토지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사항 정리 79. 등기필용지서 정리(주택, 건물, 토지) 80. 건물, 토지 비과세/감면 물건조사 81. 도시계획 고시지구 관리 82. 개별주택 특성조사 83. 개별 주택가격 산정관리 84. 개별 주택가격 검증관리 85. 개별 주택가격 결정공시 관리 86.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회 운영 87. 기타물건 시가조사 88. 기타물건 과표 승인요청 관리 89. 기타물건 과표 결정·고시 관리 90. 지방세 과표상의 위원회 심의회 운영 91. 개별주택가격 공부 및 도면관리 92. 주택가격 자동산정 프로그램 시스템 전산관리
회계과	1. 지출원 사무(일반 특별회계지출 및 지출계산서 보고) 2. 사업소·읍면동 회계사무 지도 감독 3. 일상경비 교부 및 출납계산서 심사관리 4. 세입세출결산서 작성 및 재정연감 작성 5.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 6. 지출증빙서 보관 관리 7. 국·도비 일상경비 출납계산서 보고 8. 감중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업무추진 9. 회계관계 적인 관수(시비, 도비, 국비) 10. 공무원 급여관리 및 연말정산 추진 11.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관리 12. 채권압류관리(공사대금, 급여 등) 13. 복식부기자산 및 부채관리 14. 복식부기 세출회계 검수 및 지출업무 추진 15. 건설중인공사 자산회계 처리 16.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17. 복식부기 재무제표 작성 결산업무 추진

실·과명	분장사무
	18. 복식부기 운영자 교육관리 19. 물품의 취득구매 및 검수 확인 20. 물품정수 책정, 배정 및 총괄업무 관리(본청, 사업소, 읍·면·동) 21. 물품수급계획 수립 및 재물조사 실시 22. 공사 및 용역계약(기타 일반계약 포함) 및 검사, 검수 임회 23. 물품 취득구매 및 검수 확인 24. 관급자재 구매 25.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계약사무 대행 26. 건축·토목공사 및 부대공사 계약심사 27. 물품구매, 제조 및 용역 계약심사 28. 조달구매 추진 29. 공사하자 검사 30.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 31. 국·공유재산 대장의 보존, 관리 32. 국·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33.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임대료 조정 34. 국·공유재산의 등기 촉탁 35. 국·공유재산의 변상금 및 대부료 과징업무 36. 국·공유 은닉재산 색출 및 관리 37. 국·공유재산 관리보전 및 추속조치 추진 38. 국·공유재산 소송업무 추진 39. 국·공유재산 대부계약 추진 40. 국·공유재산 채납처분 및 채납액 징수 41. 국·공유재산 전산프로그램 관리 42.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업무추진 43. 청사관리 총괄 44. 공유 영조물의 관리 및 손해보험의 관리 45. 시유 건축물의 공사설계 및 집행 46. 영선 공사용 관급자재 관리 47. 형·관사 보수공사의 설계 및 감독 48. 전기, 수도, 냉난방, 가스, 소방 유지관리 49. 국·도·시유재산 건물 시설유지관리 50. 관용차량 정수 및 운행, 정비 등 운영 전반 51. 기타 영선공사 및 재산에 관한 사항
주민생활지원과	1. 주민생활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주민생활시책 홍보 및 교육 3. 주민서비스욕구조사 및 지방 사회복지정책 평가업무 4.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 5. 사회복지 통합관리 망 구축 및 관리 6.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활동대책

실·과명	분장사무
	7. 저소득자녀 장학금 관리에 관한 사항 8. 의사상자 및 보훈단체관리 9. 현충일 행사 및 충훈탑 관리 운영 10. 노숙자, 부랑인, 무연고사망자 잠재처리 11. 재해구호에 관한 사항 12. 재해구호물자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3. 재해 이재민구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북한 이탈주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16.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운영 17. 복지위원의 위촉 및 교육, 홍보지원 18. 읍면동 복지위원 관리 19.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및 관리 20.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및 관리 21.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및 관리 22. 민·관 네트워크 구축관련 업무운영 23. 지역자원의 발굴, 동원, 연계, 관리 및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24.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25. 이웃돕기 사업에 관한 사항 26. 후원결연 및 공동모금회에 관한 사항 27.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8. 빈곤위기가정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9. 사회복지서비스제공대상자 결정 및 통지 30. 가사, 간병방문관리사 지원사업 추진 31. 강원랜드 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32. 이동복육차량 운영 지원 33. 푸드뱅크 지원 34. 보건복지부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5. 조사기획 총괄조정 36. 대상자 통합조사 및 변동사항 적용·관리 37. 복지대상자 보장결정 및 급여통지 38. 신규신청자 이의신청처리 39. 복지대상자 제외시 서비스연계 의뢰 40. 복지상담실 운영 41.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변경, 중지 및 변동사항관리 42. 기초생활보장급여지원 및 관리 43. 기초생활수급자 시설 입소 44.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45.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6. 지역자활센터 육성지원 및 지도감독

실·과명	분장사무
	47. 자활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8. 자활사업 추진 및 지도감독 49. 기초생활보장기금 용자 지원 및 상환금 관리 50. 의료보험기금 운영 특별회계 관리 51.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 52. 의료보장구 지원에 관한 사항 53. 의료보험대상자 책정 및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54. 의료급여 상해요인조사, 의료급여 연장승인 55. 의료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관리에 관한 사항 56. 차상위 등 의료급여 관리 및 수급자의 발굴지원 등 57. 차상위계층, 사회취약계층, 조건부수급자 관리 58. 저소득층 생업자금 용자 59. 사랑의 집짓기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0. 통합사례관리사업 61. 자산형성지원사업 62. 의료급여 돌니지원사업 63. 의료급여 임플란트지원사업
사회복지과	1. 사회복지 업무 총괄 및 조정 2. 노인복지 종합대책 수립 추진 3. 노인복지시설 및 경로당 신·증축 4.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추진 5.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신고업무(법인, 개인) 6. 사회복지법인 설치신고 및 관리 7. 저출산고령화 대책 관련업무 추진 8. 노인 각종급여 지원(경로연금, 교통수당, 장수노인수당) 9. 경로연금대상자 책정 및 변동관리 업무 10.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11. 노인 무료급식지원사업(식사배달, 경로식당) 12. 어버이 날, 노인의 날 행사 지원 13. 노인생활시설(법인)관리 및 운영비 지원 14. 노인복지시설 입, 퇴소 관리 15. 재가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비 지원 16. 개인운영신고시설 관리 및 운영비 지원 17. 특거노인 지원사업 18. 노인여가 복지시설 설치 및 등록 19.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20. 노인여가 복지시설 개·보수 사업 21. 노인여가 복지시설 활성화 사업 22. 노인회 및 분회 운영관리 지원 23. 노인복지기금 관리 및 운영

실·과명	분장사무
	24. 사설요지 및 사설납골시설 설치허가
	25. 장례예식장 운영 지도 및 감독
	26. 묘지관련 민원업무 처리
	27. 공설묘지 내부운영 관리 및 지원
	28. 분묘 개장허가 및 신고
	29. 삼척시 공설묘지운영 및 시설관리
	30. 사설묘지 설치허가 및 신고
	31. 분묘개장허가, 신고
	32. 여성정책, 아동보육업무 종합기획 및 추진
	33. 여성정책분야 기획 및 조정
	34. 여성정책분야 각종 평가 및 보고서 작성
	35. 여성단체 및 여성자원 활동센터 관리
	36. 여성복지 시설설치 및 지원
	37. 저소득 모.부자가정 책정 및 보충
	38. 요보호여성 시설입소 및 지원
	39. 외국인주부생활 안정지원
	40. 각종 여성교육 및 사회교육참여 업무
	41.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업무
	42. 장애아 보육시설 신축 및 법인설립업무
	43. 보육시설 인.허가 및 변경업무
	44. 보육시설 각종 보조금 및 지원업무
	45. 보육시설 지도 점검 및 운영 전반 관리
	46.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47.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업무
	48. 보육시설 종사자관리 및 교육
	49. 아동복지시설 신고 및 운영지원
	50.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지원
	51. 어린이 날 및 아동관련 행사 지원
	52. 아동급식계획 수립 및 지원업무
	53. 아동복지 및 영.유아 복지증진에 관한 지원
	54. 저소득 보육료 지원대상자 책정
	55. 요보호아동 시설입소 및 지원
	56. 건전가정 종합계획 수립 추진
	57. 결혼중개업
	58. 여성권익증진
	59. 드림스타트 사업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
	60. 드림스타트 수행기관, 협력기관 선정 및 관리
	61. 드림스타트 수행인력 관리
	62. 청소년 육성업무 종합계획 수립
	63. 청소년지도위원 및 유해환경감시단 구성운영

실·과명	분장사무
	64. 청소년 전용시설 확충, 청소년시설 신고처리 및 시설위탁 운영관리
	65. 청소년단체 지도 관리 감독
	66. 청소년지도자 양성교육
	67. 각종 청소년 행사 개최
	68. 청소년 진로 생활상담.지도
	69. 비행청소년 선도보호
	70. 청소년 생활체육 진흥 업무 추진
	71.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및 공부방 운영관리
	72. 청소년 수련활동 운영관리
	73. 청소년 희망기금 운영 및 지도관리
	74.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관리(청소년수련관, 도계청소년과학센터)
	75. 기타 청소년에 관한 사항
	76. 장애인복지업무 총괄기획 및 조정
	77.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협회 지도관리
	78. 장애인복지시설 수립 및 추진
	79.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
	80. 장애인복지시설 및 협회 운영지원
	81.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
	82. 차상위장애인 급여책정 및 증지
	83.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 및 관리
	84. 장애인활동 보조인 지원사업 추진
	85. 농어촌 재가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업무추진
	86.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및 관리
	87.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
	88.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보조금 지원
	89. 장애인 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운영전반
	90.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추진
	91. 장애인 고용창출 업무추진
	92. 장애인의 날 행사 및 장애인예술제 업무지원
	93. 장애인 단체 각종 행사지원
	94. 장애인 복지센터 및 보호작업장 건립업무지원
	95. 장애인 시설 입소 및 지원
	96. 재가 장애인 건강관리 업무지원
민원봉사과	1. 민원행정 종합기획 및 민원시책업무 추진 총괄 2. 민원사무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업무 3. 민원실 전용 공인 관리 4. 청구민원의 즉결 처리 5. 일반 민원서류의 수발 통제 6.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부여업무 관리 7. 취약사무관리

실·과명	분장사무
	8. 고충민원 접수 및 관리
	9. 민원담당공무원 교육
	10. 인종기 관리
	11. 행정사 신고업무
	12.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13. 인감증명 사무 지도
	14. 외국인 등록사무 관리
	15. 민원1회 방문처리사항의 종합관리
	16. 「회방문 상담창구」, 「민원불편신고센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17. 복합 인.허가 민원전반에 대한 안내.상담 및 민원서류 접수 분류
	18. 민원증게소 운영관리
	19. 민원서류 지도.감독 및 민원통제
	20. 전자민원 및 민원서비스혁신(G4C) 시스템 운영관리
	21. 여권신청 접수 및 처리
	22. 외국인 등 인감증명발급에 관한 사항
	23. 각종 국가자격원서 교부
	24. 어디서나 민원 발급제도 운영관리
	25. 가족관계등록부 및 폐쇄등록부 보존 관리
	26. 가족관계등록 재신고 처리
	27. 전산 가족관계등록부 및 폐쇄등록부 관리
	28.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정전 '호적법'에 따른 제작 등 .출본 증명 교부
	29. 수형인명표 관리
	30. 산원조회 업무처리
	31. 선거권 없는 자 관리
	32. 법원 가족관계등록 정정 허가 신청 정비
	33. 인구동태 업무
	34.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 전반
	35. 지가열람 및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36. 부동산 평가위원회 관리
	37.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운영
	38.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39. 토지거래규제(허가.신고)업무
	40.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경인 업무
	41.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사항
	42. 토지정보 시스템(LMIS)관리
	43. 토지종합정보망 구축 D/B 자료관리
	44. 지적공부 보존 관리
	45. 지적측량감사 및 이동지 정리
	46. 지적측량기준점 보존관리
	47. 지적전산도면 오류자료 정비추진

실·과명	분장사무
	48. 한국토지시스템(KLIS) 운영관리
	49. 지적재조사 및 지적복구
	50.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 정리
	51. 지적민원 해피콜센터 도우미 운영
	52. GIS 기본도면 DB 자료지원
	53. 지적측량결과 Feed-Back 시스템 운영
	54. 토지이용지 조사 및 지적공부정리
	55. 지적결계측량별 행정구역별 DB자료 구축 및 정비
	56. 지적측량 결과도 및 토지이용관련 자료전산화
	57. 토지관련 과태료처분 및 부과징수
	58. 지적행정시스템 관리 및 전산운영
	59. 지적통계 관리
	60. 외국인 토지취득 등 허가(신고) 및 사후관리 관련업무
	61. 소유권 변동 자료정비
	62. 토지표시변경 등기축적업무
	63.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조사 부과
	64. 지적공부 등본 열람, 발급
	65. 지적정보센터 자료제공 및 운영
	66. 비법인단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관리
	67. 지적공부 오기 정정관리
	68. 부동산실명법 운영
	69. 지적등기전산 자료대사 및 정리
	7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
	71. 지적원부전산화 DB 자료관리
	72. 공간정보 종합추진 계획 수립
	73. GIS(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 관리 및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 및 조정
	74.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유지보수
	75. GIS 전산장비 운용 및 유지관리
	76. 공간영상(항공측량 및 위성사진) 구축
	77. 인터넷 및 인터넷 GIS(생활지리정보) 구축
	78. 도시기준점 설치 및 관리
	79. 지리정보 보안관리규정 제정 및 운영
	80. 지리정보관련 위원회 운영관리
	81.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NSDI) 구축
	82. 국가기준점(측량표지) 관리
	83.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추진
	84. 도로구간설정 및 도로명 부여
	85. 도로명주소 시설물(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설치 및 유지관리
	86. 도로명주소 관리 안내시스템 유지관리

실·과명	분장사무
	87. 도로명주소 정보관리 및 자료생성 88. 지적선진화사업 및 지적디지털전환사업 추진 89.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운영 90. 연도별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 91.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92. 지적재조사 소유자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 93.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선정 및 조정 94.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95. 지적재조사 경계조정 업무 추진 96.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 및 조정금 지급 .징수 97. 지적재조사 사업대행자 업무 감독 98.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 운영 99. 지적측량 기술지원 100. 측지계 좌표변환사업 추진 101. 통합기준점 및 공동기준점 측량 관리 102. 지구별 세계측지계 변환 측량 및 성과 관리 103. 부동산일원화 오류자료 정비 104. 스마트 국공유지 관리사업 추진 105. 위성측량시스템 및 장비 운영 관리 106.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추진 107. 행정구역 경계조정 협의 지원
환경보호과	1. 환경보전 종합계획의 수립 2. 지방의제 21 추진 3. 환경관련 특정시설신고 및 지도점검 4.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 5.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관리 업무 6. 유해조수 포획 7. 수렵면허 시험 관리 8. 수렵면허장 허가, 갱신, 재교부 9. 수렵면허자 관리 10. 수렵위법행위(밀렵) 단속 및 처벌 11. 순환 수렵장 운영관리 12. 조수 보호원 관리 13. 조수보호구, 금벌구 설정 14. 조수 등 수출, 수입, 반입허가 관리 15. 공공시설입지, 국토이용계획 변경, 환경성 검토 협의 16. 생태계 보전 및 관리 17. 국토환경 가꾸기 사업 추진 18.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19.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제 운영

실·과명	분장사무
	20. 하천(호소)수 수질관리 21. 비점 오염원 관리 22. 먹는 샘물 제조 및 유통관리 23. 산간계곡 자연 휴식년제 지정 관리 24.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정관리 25. 환경신문고 운영관리 26. 강원환경감시대 운영관리 27. 토양오염 유발시설 지도점검 및 토양측정망 설치운영 28. 오염하천 정화사업 29. 먹는 물 개발 제한구역 지정 및 수질감사 30.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31. 연료사용규제에 관한 사항 32. 고체연료사용승인 및 관리 33. 사업장 토사유출관리 34. 배출업소 지도단속 종합계획 수립 35. 공해배출 자율점검업소 지정 및 관리 36. 유독물 영업자 등록 및 지도관리 37. 배출 부과금 부과 및 체납관리 38.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 및 소송수행 39. 대기, 소음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 신고 40. 분소음 진동 규제지역 지정 및 관리 41.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42.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및 특정 공사 사전신고 관리.지도 43. 생활소음 및 생활악취관리 44.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규제관리 45.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지도 단속 46. 실내공기 질 및 유해화학 물질 지도관리 47.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관리 48. 감염성 폐기물 지도, 점검 49. 전국오염원 조사관리 50. 환경관리인 선.해임 및 교육실시 51. 사법경찰, 검경합동단속 관리 52. 청소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53. 생활폐기물(쓰레기)수집 운반업 허가 및 지도단속 54. 쓰레기수거 및 쓰레기종량제 위반자 단속 55. 청소 대행업체 지도단속 56. 환경미화원 사역, 관리 및 청소 관리 57. 농촌 쓰레기 대책업무 58.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 59. 폐기물 재활용 신고 및 지도점검

실·과명	분장사무
	60. 쓰레기 종량제 및 봉투 제작관리
	61. 지정폐기물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도관리
	62. 쓰레기 수거처리 대책추진
	63. 자연보호 및 환경 대청결운동 추진
	64. 1회용품 사용억제 지도단속
	65. 폐기물 적법처리시스템 관리
	66. 환경미화원 노사관리
	67. 대형폐기물 수거 및 관리
	68. 폐기물 처리 시설신고 및 관리
	69. 사업장 폐기물(일반) 배출자 신고 및 관리
	70. 폐기물 처리업체 인.허가 및 지도점검
	71.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 업무
	72. 건설폐기물처리업 인.허가 관리
	73. 기술관리인 선임,해임,교육관리
	74.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무
	75. 감량화사업장 신고 및 관리
	76. 환경업무 관련 소송업무 수행
	77. 오수,분뇨,축산폐수 설계시공업, 관리업 등록 및 오염도 관리
	78. 축산폐수 배출시설 및 간이 축산폐수정화조 인허가 및 지도관리
	79. 공중화장실 지도관리
	80. 정화조 제조업, 판매업소 지도관리
	81. 오수정화, 합병, 정화조 인허가 및 지도관리
	82.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및 관리
	83. 민간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추진 및 운영관리
	84. 분뇨처리장 민간위탁자 운영 및 지도관리
	85. 단독정화조 신고관리 및 내부청소 관리
	86. 환경시설업무 총괄
	87. 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 및 관리
	88. 재활용시설 관리
	89. 쓰레기매립장 설치 및 관리
	90.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및 관리
	91. 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 및 관리
	92. 환경시설공사 관련 보상 및 등기업무
	93. 공사관련 설계 및 관리
	94. 매립장침출수 처리시설 운영
	95. 침출수 수질검사 및 관리
	96. 매립장 주변마을 자원 및 영향조사
	97. 사용종료 매립지 관리
	98. 주민감시원 채용 및 관리
관광정책과	1. 종합관광개발계획 수립 시행 및 조정

실·과명	분장사무
	2. 관광지 개발계획 수립 조정
	3. 관광 진흥 시책 발굴 및 추진
	4. 관광객 수용대책 수립 시행
	5. 관광사업체 등록 및 지도감독
	6. 해수욕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7. 해수욕장 시설 개선사업 추진
	8. 마을관리 휴양지 지정 및 운영,관리
	9.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 등
	10. 비지정 관광지 종합관리
	11. 해맞이행사 기획 및 추진
	12. 해양관광 마스터플랜 및 민자유치 개발 추진
	13. 새천년도로 관광시설물 관리
	14. 이사부 장군 문화축전 및 역사 조명
	15. 수로부인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16. 남화산 해맞이 테마공원 조성사업
	17. 돌곶연hal 업무추진
	18. 덕항산 자연보호 등산대회 운영
	19. 해신당공원, 왕영조공원 전시연출 및 관리
	20. 기타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사업 추진
	21. 관광자원 홍보 등 관광홍보 종합계획 수립 시행
	22. 공원개발종합계획수립 및 조정과 이에 수반되는 사항
	23. 관광홍보를 제작 정비
	24.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25. 관광축제 등 이벤트 개발계획 수립 시행
	26. 관광객 유치사업 등 이에 수반되는 계획수립 시행
	27. 관광안내표시판 정비 등 안내체계 개선사업 추진
	28. 관광지 통역안내 및 관광해설사 관리
	29. 관광안내 인터넷사이트 관리
	30. 온천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
	31. 대이리 군립공원 및 편입부지 임대료 관리
	32. 국내외 관광교역권 추진
	33. 관광사진 공모전 운영
	34. 수도권 전철역 및 전동차 광고 추진
	35. 관광자원 발굴 및 개발
	36. 기타 관광안내 정보에 관한 사항
	37.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38. 관광지 조성사업시행 허가에 관한 사항
	39. 지정관광지 개발사업 추진
	40. 관광개발 민자유치사업 추진
	41. 관광지 기반조성사업 추진

실·과명	분장사무
	42. 덕풍계곡 플라이닉시터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3. 관광시설사업 설계, 집행 및 지도감독 44. 이사부 테마파크 및 해양레포츠단지 조성 45. 기타 관광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과	1.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2.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추진 3. 지추업무 지도육성 4. 경제교육 및 홍보 5. 지방물가안정 종합대책 수립 및 조정 6. 소비자 보호대책 수립 및 조정 7. 공공요금의 관리 8. 불가안정 지도단속 9. 제조업체 소매업 지정관리 10. 상업 진흥 종합계획 수립 11. 도, 소매업진출에 관한 사항 12. 시장육성 및 지도관리 13. 상공단체 지도육성 14. 삼거리 질서 확립 15. 가격표시제 운영지도 16. 부정경쟁행위 지도단속 17.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등에 관한 지도 업무 18.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19. 삼척사이버상가 홈페이지 관리 20. 노정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및 조정 21. 노동단체의 지도감독 22. 노조설립 및 신고업무 처리 23. 노동정의 조정 24.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25. 삼척사랑상품권 운영 26. 불법공산품 지도단속 27. 대부업 관리 28. 통신(방문) 판매업 관리 29. 민생경제 침해 단속지도 30. 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31. 투자유치, 기업지원 전략에 관한 주요시책 및 종합계획 수립 32.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33.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 구조, 기능 고도화 34. 기술개발, 특히, 실용신안 출원 등 지원 35. 기업의 산업협력 및 공동협력 촉진 지원 36. 기업의 종합상담 및 민원사무 지원

실·과명	분장사무
	37. 투자 및 유치 설명회 등 개최 38. 기타 국내·외 자본 투자유치 및 유치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9. 수출 및 과학기술진흥 40. 공예품대전 관련 업무 추진 41. 공산품 개발 육성 42.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43. 중소기업 판로지원 44. 공장설립 승인 및 등록변경(창업사업계획 승인 포함) 45.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46. 농공단지임주 및 관리 육성 47.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관한 사항 48. 창업보육센터 지원 49. 언턴수급대책 및 수요관리 50. 개량기 및 승강기 관리 지도 감독 51. 전통직업 전문학교 관련 민원처리 52. 광산 동향 및 광물생산 관리 53. 채광계획 휴지인가 및 재개신고 54. 채광개시 유예인가 55. 채광계획인가 공익장해 협의 56. 광업권 관리 57. 광해방지사업 추진 58. 광구 및 광적관리 59. 가형 광산 공해방지사업 60. 광해방지 국고보조시설 사후관리 61. 폐광탄광 광해방지 사업 62. 광업권 설정출원에 따른 공익협의 63. 광물생산 실태관리 64. 광업사무소의 설치신고 및 광산명칭변경신고 수리 65. 석탄품질유지 의무위반자 행정처분 66. 폐광탄광 이적근로자 실태관리 67. 광산업동향 및 운영 실태조사 68. 기타 광산업반 관계 69. 가스안전관리계획 수립 70. 가스업체 안전점검 사후관리 71. 가스시설 관리인 등록 및 관리 72. 지역에너지사업 추진 73. 고압가스(판매, 저장, 제조업, 충전)허가 및 변경허가 74. 고압가스(특정설비제조업 등) 허가 및 변경허가 75.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 76. 액화석유가스(용품 등) 허가 및 지도감독

실·과명	분장사무
	77. 도시가스시설 공사계획 승인 78.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79.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 80.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업무 81. 가스안전관리 제도 홍보 82. 석유류 판매업(주유소, 일반판매소)지도 감독 83. 에너지 소비절약 기획 운영추진 84. 연탄보일러 설치지원사업 추진 85. 전기용품 안전관리 86. 전기공사업 관리 87. 직업소개소 등록 및 지도감독 88. 고용촉진훈련에 관한 사항 89. 구인·구직에 관한 중개 및 공보 업무 90. 실업대책 업무 추진 91. 공공근로 및 인턴사업 추진 92. 전기불량시설 개수 명령 93. 가스공급시설 관리 94. 석유 판매업소 관리 95.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96. 난방연료 수급대책 수립 및 추진 97. 저소득층 가스 및 전기시설 개보수 추진 98. 원전 및 발전소주변마을 지원사업 추진 99.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100. 송전선로 건설 행정지원 101. 기타 진폐 업무 일반 102. 행정규제 완화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103. 지자체 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 104. 규제개혁관련 법령개선 건의 및 상위법령과의 불일치 자치법규 개선 105.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규제총량제, 한시적 규제유예제 등) 추진 106. 지자체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대응 107. 기업 등 지역현장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 108. 「지방규제 신고고객 보호」 운영 조례(현장) 제정 운영
안전총괄과	1. 재난관리 기획·운영·평가 총괄 2. 지역재난 관리계획 수립 3. 재난대비 교육·훈련 실시 4.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5. 재난관련 상황관리 및 수습대책본부 운영(특별재난·재해, 사고 등) 6. 재난관련 여론 동향 및 정보 수집 7. 중점관리대상 시설 지정 점검관리 8. 공공시설물 공동주택 안전 점검

실·과명	분장사무
	9. 재난관리 물자·자원·장비 관리 10. 안전문화 정착 및 생활재난 예방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신규사무 등 12. 안전중장기계획 수립 운영 13. 특사경 지원에 관한 사항 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국가기반보호체계 업무 15. 자연재난 복구 총괄(피해복구상황관리) 16. 방재계획(사전대비 등) 17. 풍수해보험 18. 재해위험지구 정비·관리 19. 재해예방시스템 운영 20. 재해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평가 21. 소방방재청 소관 기타시설 복구 22. 기타 자연재해 관련 사업 23. 재난수습관련 인력·장비 지원 24. 긴급복구상황 관리 25. 자연재해 재난원인 분석 26.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27. 삼척시 자율방재단 구성 등 자연재난 관련 민관군 협력에 관한 사항 28. 지역치안협의회 지원 업무 29.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업무 30. 각종 네트워크 구축관리 31. 소방서 관련 업무 협조 및 지원 32. 안전도시 추진을 위한 응역에 관한 사항 33. 손상예방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사항 34. 안전도시 공인절차 수행 및 공인 후 안전도시 사업의 지속적 관리 및 추진 등 안전도시 전반 35. 민방위 종합계획 수립 36. 인력동원계획 및 자원관리 37. 전시 민방위 계획 수립 38. 경보전달 및 지역경보 발령 39. 경보망 운영 요원 교육훈련 40. 민방위 대원교육 훈련 41. 기타 기존 민방위 관련업무 42. 충무계획 수립 및 시행 43. 을지연습 추진 44. 비상급수 및 대피시설 관리 45. 공약근무요원 관리
농업정책과	1. 농림사업 종합기획 조정 2. 농경심의회 운영·관리

실·과명	분장사무
	3. 관광휴양지개발사업
	4. 농업인 인력육성 및 지원관리
	5. 농업인 추계자 및 전업농 육성
	6. 농업정책지원사업
	7.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관리
	8. 농업법인경영체 관리
	9. 농어민자녀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10. 농업인 정보화사업 추진
	11. 농업인 컨설팅 지원
	12. 지역특화사업 추진
	13.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추진
	14. 새 농어촌 건설운동 추진
	15. 녹색농촌체험 마을 지원
	16. 농촌관광 이벤트 지원
	17. 농어촌 민박시설 확충사업 추진 및 지원
	18. 테마마을조성 및 농촌경관 개선 지원
	19. 도농교류 및 농어촌 휴양관리 지원
	20. 농어촌 진흥기금 및 소득금고 지원
	21. 친환경 유기농 마을리더 육성
	22.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및 농가도우미 지원
	23. 여성농업인 개인 환경개선 및 공동취사장 지원
	24.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25. 농지전용허가, 협의, 신고 및 용도변경
	26. 농지불법행위단속
	27. 농정소식지제작
	28. 농지원부관리 및 농지 이용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29. 농지 다 용도 일시사용 허가
	30.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31.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32. 양곡관리 특별회계 운영관리(양곡매출, 보관, 수확, 결산, 물품관리)
	33. 양곡수매, 조작, 가공, 대외양곡 관리
	34. 귀농자 지원
	35.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운영
	36. 식량중산 계획 수립
	37. 농업재해 대책
	38. 산물벼 가공공장 운영관리
	39. 공공비축 미곡매입 추진
	40. 쌀소득 등 직불제 추진
	41. 조건불리직불제 추진
	42. 주민소득사업 추진

실·과명	분장사무
	43. 농토배양 사업
	44. 수도작, 전작 추진
	45. 농약, 비료 전반
	46. 농기계 기능 요원관리
	47. 농약, 비료, 중요 판매업소 등록 및 관리
	48.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사후관리
	49. 농산물 포장재 사업
	50.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 추진
	51. 산지유통시설 및 저온 유통기반사업 추진
	52.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및 농산물 안정성 조사
	53. 농산물 가공 및 직거래 추진
	54. 과수, 채소, 화훼, 잡곡, 특작 지원사업
	55. 탄광지역 포도단지 육성
	56. 고령지대체 작목개발
	57. 고령지 비교우위사업 추진
	58. 고령지 무사마귀병 방제지원
	59. 토양오염방지사업 추진
	60. 토양개량제 지원
	61. 지력증진 사업
	62. 한계 농지 경제작물재배 사업 추진
	63. 다목적 건조기 지원사업
	64. 도로변 직판장 운영관리
	65. 잠업 및 화훼 일반
	66. 마늘경쟁력 제고지원
	67. 고령지채소 재배지원
	68. 과원 폐업 지원
	69. 과수농가농작물 재해 보험 지원
	70. 고령지 토양오염방지 기자재 지원
	71. 영세농 자립 기반사업 추진
	72. 버섯재배시설 개선사업 추진
	73. 수출단지 조성사업 추진
	74. 시설원예 고기술 육성
	75. 비닐하우스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76. 정월대보름맞이 행사 추진
	77. 유채꽃재배 및 행사추진
축산과	1. 축산사업 종합기획
	2. 축산업 단체 지도 육성
	3. 가축통계조사 및 축산재해대책추진
	4. 가축 방역사업 추진
	5. 축산단지조성 및 개량단지 육성

실·과명	분장사무
	6. 조사료생산 사업 및 장비지원 관리 7. 초지조성 및 사후관리 8. 축산분뇨처리시설 및 사후관리 지원 9. 축산물 위생관리 10.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추진 11. 한우장려 지원사업 추진 12. 친환경 축산 직불제 추진 13. 축사환경개선사업 추진 14. 공수의 및 동물병원 관리 15. 유기동물보호 및 관리 16. 가축무효순회 진료 지원 17. 강원 한우광역 브랜드화사업 추진 18. 가축인공 수정신고 및 수정실적 관리 19. 축산물판매업 인허가 및 지도 20. 축산물유통 및 가격관리 지도 21. 축산업 등록업무 22. 낙농진흥 및 학교우유 급식사업 추진
산림복지과	1. 산림종합계획 등 산림정책 총괄 2. 지역산림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영림계획 작성.운영 및 영림 기술자 관리 4.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기준.지표 설정 5. 미래 경제림단지 조성사업 추진 6. 조림사업 계획수립 및 실행지도 7. 임업진흥권의 지정.관리 8.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 및 해제 9. 지역특화 숲 조성 및 특색조림사업 추진 10. 조림종 목목 생산지도 11. 종묘 판매 등록자 관리 12. 채종원, 채종림, 수형목, 채수포 조성 관리 13. 나무심기 관련 행사 추진 14. 「미래의 숲」 조성관리 15. 주요 하천유역 수원활양림 육성.관리 16. 산림기능 분류 및 자원관리 지침운영 17. 목재수급계획 수립.조정 및 가격안정대책 18. 임목벌채허가 및 사업신고 처리 19. 임목벌채 지도 및 벌채 유통업 관리 20. 목재비축림 소유 권장 및 육성 21. 목재 종합 집하장 유통센터에 관한 사항 22. 목재이용 실태조사 등 목재이용.유통에 관한 사항 23. 보안림 지정.해제 및 관리

실·과명	분장사무
	24. 임도시설 및 사후관리 25. 산림토목 기술자 육성.관리 26. 해안 방제림 조성.관리 27. 조림지 사후관리(풀베기) 28. 산림병해충 및 재선충 방제 및 예방 29. 산림사고 예방.단속 및 사건처리 30. 청원산림보호 직원 관리 31. 산림업무용 극인 관리 32. 백두대간 보호정책 총괄.조정 33. 백두대간 보호지역안의 개발행위 사전협의 및 지도 감독 34. 백두대간 지역주민 지원사업 35. 백두대간지역 훼손지 복원.복구 및 기타 보호에 관한사항 36. 산지이용구분조사에 관한사항 37. 보전산지 지정.해제.고시.전용허가 및 협의 38. 산지전용 제한지역 지정.관리산지의 타 용도 전용에 관한사항 39. 대체산림조성비 부과.징수.환급 40. 산림항공사진 관리 41. 산림 내 수목 굴취.채취에 관한 사항 42. 운재료 및 작업로 설치에 관한 사항 43. 산림 내 토사채취 및 채석허가 복구에 관한 사항 44. 산림휴양시설(휴양림, 산림욕장)조성 및 관리 45. 산림문화교육 및 유.무형 산림문화 발굴 육성 46. 산악레포츠 시설의 조성.관리.운영 47. 숲 해설가 및 푸른 숲 선도원 육성 48. 산촌 녹색관광 및 생태관광 개발 육성 49. 시민녹화운동 및 국민 참여 숲 조성 50. 녹지조성, 관리에 관한 사항 51. 도시 숲, 학교 숲 조성 지원 52. 가로수, 산림공원, 수목원, 양묘장 조성.관리 53. 산림생물 다양성 보전.관리 54. 자생식물 보호.증식 및 우리꽃길 조성 55. 생태 숲 및 환경림 조성.관리 56. 산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57. 수목장(樹木葬)에 관한 사항 58. 「꽃으로 덮인 강원도」 조성 사업 59. 산촌 개발에 관한 사항 60. 산촌 진흥지역의 지정.관리 61. 꽃묘 생산 계획수립 및 생산.식재 62. 소공원.가로화단 및 도로변 조경수 식재.관리 63. 무궁화 식재 및 관리

실·과명	분장사무
	64. 도로변 경관림 조성 및 산림정비 사업 추진 65. 향토꽃나무 육성 및 보급 관리 66. 사유림의 경영관리 및 대부·사용 허가 67. 사유림의 매각, 처분 및 임산물 매각에 관한 사항 68. 산림지리정보 시스템구축 및 활용 69. 산림조합육성 및 지도·감독 70. 임산물 원산지표시, 주산단지 지정·육성 71. 농림사업(단기소득 임산물, 산림농업, 임업정책자금)추진 72. 산림복합경영 및 산림농업 육성 73. 수실류, 버섯 등 식용자원과 특용임산물 육성·지원 74. 임산물 가공·이용 및 유통지원(산림부산물 포함) 75. 목조주택 등 목구조산업 육성·지도 76. 칠, 목탄, 목초액, 홉밥 등 한지산업 육성 77. 목재산업 육성 및 목재문화 진흥 78.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공급 등 임산연료 활용 대책 79. 임업정책자금 관리 및 임업체제, 산림보원에 관한사항 80. 산불방지 정책의 수립·시행 81.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 설치·운영 82. 산불진화대 조직·운영 83. 산불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관리 84. 유급강시원 배치에 관한 사항 85. 산불 위험요인 조사 및 제거 86. 산불 위험 예고 시스템 구축·운영 87. 산불 관련 장비 보급 및 관리 88. 산불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89.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방화선 구축 관리 90. 산림 무선 통신망 구축 및 운용 관리 91. 산림 공익근로요원 교육·훈련 92. 명예 산림보호지도원 위촉 및 관리 93. 산불진화항공기 운용 및 통제 94. 산림 유공자 보호림 및 보호수, 회귀수목 보호관리 95. 우량 소나무림 및 노송 보호관리 96. 산림재해(충·수·설해)예방과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97. 산림재해방지대책 계획수립 및 복구 98. 사망자 지정 및 해제 99. 푸른 산 맑은 물 지키기 관리 100. 송림보호 및 산지정화 보호구역 지정·해제 101. 산림유역관리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실행
건설과	1. 건설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국도 및 지방도공사 등 차별용지 기다, 위탁 보상에 대한 토지수용 및 매수와 보상

실·과명	분장사무
	3. 국유재산 관리(국토해양부 소관재산) 4. 국가 비상사태의 피해복구 및 건설동원에 관한 사항 5. 가로 질서 확립(노점상, 노상적치물) 6. 과적차량 지도단속 및 사건처리 7. 점도구역관리 8. 국유재산(도로)사용 수익허가,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9. 도로정용 허가 및 수수료 정수에 관한 사항 10. 도로편입 사유지관련 소송수행 11. 도로변 휴게소 설치에 관한 사항 12. 폐천부지 매각 및 용도 폐지 13. 국도 및 지방도 도로구역 결정고시 협의에 관한 사항 14. 사도설치 허가 및 축조변경 허가 15. 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 16. 도로, 교량 시설의 종합계획 17. 도로공사(읍·면·동지역내) 18. 도로공사에 대한 토지수용 및 협의 매수 19. 주민속원사업 20. 도로, 교량시설의 안전점검 및 개보수 21. 도로개설, 교량의 가설공사 22. 시설도로의 확·포장 23. 도로유지 관리 및 수로원 관리업무 24. 도로 미불용지 보상 25.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 추진 26. 도로시설물 교통사고 업무추진 27. 도로표지판 관련 업무 추진 28. 국도 및 지방도 도로구역 결정협의에 관한 사항 29. 토지수용 재결 업무추진 30. 도로분야 소송업무 추진 3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32.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3. 하천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34. 하천공사의 감독 및 시행 35.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관리 및 정비사업 감독 및 시행 36. 하천 수해복구계획 수립 및 추진 37. 유도선의 하천 공유수면 점·사용 등에 따른 유도선 운영 인허가업무 38.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및 불법행위단속 39. 골재채취업 등록에 관한 사항 40. 하천 및 육상골재에 관한 사항 41. 하천, 공유수면 인·허가 관리 42. 지방도급 하천 보상

실·과명	분장사무
	43. 농어촌 정주생활권 종합개발 기획조정 44. 농업기반조성 45. 토지개발사업의 조사 측량 46. 농업용수 및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47. 관개시설 및 개발 48. 개간허가 및 지도 49. 경지정리사업 대상지선정 및 사업추진 50. 원지처분관리 51. 국유재산 농지관리시설 등록 및 지도 52. 농지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및 수리시설 관리위탁 53. 한해대책 종합계획 및 장비이용권리 54. 저수지, 관정, 양수장 개발사업 추진 및 관리 55. 농로개설 및 기계화 경작로 사업 56. 오지종합개발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57. 휴게소 화장실 관리 58. 광동엽 상,하류 수질측정 운영 등 체계적 관리 강화 59. 댐 안전성 평가 및 강화조치 관련 회의조치결과 통보 60. 도경계 관문지역 환경정비 사업 61. 국유재산관리(농림부소관) 62. 국유재산 및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 허가 63. 밭 기반정비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64. 양수기 사용신고 65. 농경지 피해조사 및 복구 66. 수리시설 및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추진 67. 문화마을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추진 68. 도로제설대책
도시디자인과	1. 도시 일반행정 관리 2. 도시행정 평가관련 업무 3. 생활민원기동처리반운영(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수리) 4. 장기기점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5. 개발행위 허가 6. 불법행위(무허가개발행위) 단속 7. 신광산개발 업무 8.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9. 도시기본계획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 10.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 11. 도시계획 정보체계(UPIS) 구축 12.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운영 1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운영 관리 14. 개발촉진지구 지정관리

실·과명	분장사무
	15. 토지적성 평가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관련 민원서류 발급 17.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18. 도시경관위원회 운영 19. 도시경관형성사업 및 관리 20.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사항 21. 기반시설 부담금 관리 및 사업(특별회계, 부과정수, 체납처벌) 22. 도시통계일반 23.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 24. 도시개발사업 추진 25. 각종사업 보상업무 지도 26. 각종 도시 계획시설사업 감독 27. 소도읍 개발사업 28. 대학로 조성사업 및 활성화 추진 29. 도시유원지 개발 및 조성 30. 택지개발, 공단조성, 공설묘지조성 등 31. 공공개발사업 업무 32. 보상협의 및 보상업무 추진 33. 토지등기 업무 34. 도시기반시설 사업추진(주거환경개선포함) 35. 도시공원관리 및 점사용허가 업무 36. 소규모시설 사업추진(동지역 사업 포함) 37. 차선도색 업무 추진 38. 디자인 삼척」 프로젝트 개발 추진 39. 광고게시시설 설치 및 관리 40.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41. 광고물 인.허가 및 안전도 검사 42. 기타광고물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43. 시가지용벽 그래프 사업 추진 44. 탄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교통행정과	1.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추진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인.허가 관리 3. 터미널사업 인.허가 4. 교통량 조사업무 5. 승송동원 및 국가동원능력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6. 교통 영향분석평가 및 사후관리 7. 운수사업체 및 공사원 지도감독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체 관리 9. 지방 대중교통 계획 수립 시행 1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등록 및 관리

실·과명	분장사무
	11. 화물자동차 운수업체 유류세액 집행
	12. 교통약자이동 편의증진 계획 수립 시행
	13. 운수업체 교통안전 진단
	14. 교통안전종합계획 수립시행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행정처분
	16. 지능형 교통체계관리
	17. 오지교통지원 사업 및 버스운수업체 경영개선지원
	18. 교통안전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19. 교통표지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20. 교통 분야 경찰업무 협조지원
	21. 택시운송사업 면허처분 및 관리
	22. 택시운송사업체 유류세액 집행
	23. 택시불편신고 및 행정처분
	24. 택시미터기 수행정경
	25. 자동차 관리사업 인.허가
	26. 자동차 관리사업체 행정처분 및 지도감독
	27. 법령위반차량 단속 및 행정처분
	28.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업무
	29. 이륜자동차 관리
	30. 주차장 시설 및 관리 전반
	31. 공영주차장 확충 및 관리계획 수립 추진
	32. 공영주차장 위탁계약 업무추진
	33.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운영
	34. 기계식 주차장 관리
	35. 주정차 위반 질서계도 및 단속
	36.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37.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대책 수립 및 시행
	38.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고시
	39. 무인단속시스템 확충 및 관리
	40.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
	41. 교통정보센서업무 전반(ITS사업)
	42. 자동차 신규, 이전, 변경등록 및 말소
	43. 등록원부의 비치, 관리, 교부, 열람
	44. 변경,이전등록 및 이의신청 처리
	45. 자동차 검사 관련 업무(계속경사, 임시검사 및 구조변경 검사)
	46. 자동차관련 제증명 발급업무 등
	47. 자동차관련 과태료 관리
	48. 보험 미가입 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49. 경사 미필 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50. 건설기계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실·과명	분장사무
	51. 무보험 자동차 행정처분
	52. 무보험 자동차 범칙금 부과징수
	53. 무보험 운행자동차 운전자 관련 업무
	54. 영입용 차량등록번호 배정 관리
	55. 건설기계등록 및 조종사 면허관리
	56. 건설기계 경사위반, 주소 미이전 과태료 부과.징수
	57. 건설기계 사업자 관리(매매, 폐차, 정비)
	58.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 및 관리
건축과	1. 건축행정 종합계획 수립 추진
	2.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영 및 용자금 상환에 관한 사항
	3.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4. 공영주택 사후 관리
	5. 농어촌 주거환경 지구지정 및 개선사업 추진
	6. 아름마을가꾸기 사업 추진
	7. 재해주택 복구사업 및 관리
	8. 건축표준설계도서 작성 및 관리
	9. 건축허가.신고 건축물의 지도
	10. 건축사 관리 및 지도 감독
	11. 무허가 및 위반 건축물의 지도 단속
	12.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
	13.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지도
	14. 건축행정 건설화 대책 추진
	15. 주거급여법에 의한 주거복지업무
	16. 주택바우처 사업
	17. 저소득가구 전세자금관리
	18.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에 대한 사전결정제도 운영
	19. 건축 관련 종합인원실 운영
	20. 경관주택건축 등 시책사업 추진
	21. 건축 진정민원 및 소송수행
	22. 건축행정 전산화업무 추진
	23. 건축 관련 통계업무 및 재반자료 관리
	24. 지방건축위원회 운영
	25.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대지조성사업계획 수립
	26. 공용건축물의 건축협의
	27. 마을회관 운영관리
	28. 주택관리업 면허업체 지도 단속
	29. 주택조합 설립인가
	30. 공동주택 관리업체 지정관리
	31. 주택건설사업자 관리
	32. 공동주택 관리

실·과명	분장사무
	33. 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34. 부도임대 주택관리 35. 임대주택분양 전환 및 임대조건 신고 36. 주택관리사 지도감독 37. 공동주택단지 관리비용 지원 38. 학교용지 부담금 관리 39. 공동주택 민원사항 관리 40. 공동주택 행위허가 41. 건축물대장 보관 관리 42. 건축물대장 소유권정리 및 표시부분이동관리 43. 건축물 표시변경(법령 개정 후) 44.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처리 45. 건축물 대장 전산화사업 추진 46. 건축물 관련 제증명 발급 47. 건축물대장 전환, 합병신청 처리 48. 건축물 통계관리 49. 기타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해양수산과	1. 해양수산진흥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2. 어촌계 설립 분할, 합병인가 및 지도감독 3. 수산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수산단체 지도감독 5. 어장이용 개발 및 관리계획 수립 6. 어업면허처분 및 어업권 운영관리 7. 연안어용개발 및 관리계획 수립 8. 전업어가 및 어업인후계자 육성 9.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사업 추진 10. 연안어업허가 신고처분 11. 어선등록, 건조개조발주허가 12.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추진 13.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사업 추진 14. 어촌민생 및 생산 활동 지원 계획수립 및 추진 15. 한.중.일 어업협정 및 EEZ 업무추진 16. 어촌체험관광마을 사업추진 및 관리 17. 전시수산동원에 관한 사항 18. 수산관련 통계관리 19. 수산물증양식 종합개발계획수립 및 추진 20. 어촌종합개발계획수립 및 추진 21. 각종 수산시설 종합개발계획수립 및 추진 22. 어항의 지정 및 변경관리 23. 국가, 지방, 정주어항 점사용허가 및 시설물관리

실·과명	분장사무
	24. 수산시설사업 및 어업기반시설사업 25. 어항수축 등 개발사업 26. 수산 증.양식 사업 27. 인공어초 시설사업 28. 적조방지 및 피해조사 복구 29. 대북교류 지원, 항로개설 지원 30. 아름다운 등해안 만들기 사업 추진 31. 기타 증.양식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32. 어업질서 확립 종합계획수립 추진 33. 수산시설을 피해복구 34. 수산시설물의 사후관리 35. 공유수면관리(해양수산부 소관) 36. 해양레저산업개발 및 민자유치 37. 불법어업 예방 및 지도단속(내수면 포함) 38. 범죄어선 행정처분 및 집행 39.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수행 40. 수산자원 보전지구 유지관리 41. 한일어업협정 미이행어선 검거처리 42. 어업분쟁 예방 및 조정 43. 불법어업자 전업지도 44. 어업지도선 운항 및 관리 45. 재해예방 비상근무 46. 수산피해 조사 및 복구(어선, 어망) 47. 노후어선 대체 및 경제성어선 건조 48. 어선기관 대체 및 장비개발 49. 어로시설 및 수산재해예방시설사업 50. 수산물 유통사업추진 및 지도 51. 수산물 원산지표시단속 및 지도 52. 수산가공업 허가, 신고처분 지도 53. 유통시설 전반에 관한 사항 54. 연안환경 보전대책 종합계획 수립 55. 연안환경 정화사업 추진 56. 해안낙서터 지정 및 관리 57. 연안관리법에 의한 개발에 관한 사항 58. 공유수면관리(국토해양부 소관) 59. 해양레저산업개발 및 민자유치 전반 60. 낚시 어선업 신고수리 및 안전관리 61. 해양오염방지 업무추진 62. 해양폐기물 인양사업 추진 63. 어항 및 항포구 정화사업 추진

실·과명	분장사무
	64.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관리
	65.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시설 지원 및 관리
	66. 삼척시장배 전국바다낚시대회 추진
	67. 항포구 방치폐선 지도관리

[별표 7] <개정 2014. 7. 18. >

사업소장 사무분장표(제14조 관련)

사업소명	분장사무
상하수도사업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하수도사업의 기획 및 조정 2. 직원인사 및 복물관리, 문서관리 3. 보안, 직인 및 공인관리 4. 세입세출예산편성 및 관리(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5.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혁신업무 전반 6. 물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7. 상수도 요금 부과.징수관리 8. 세입일계표 작성관리 9. 상하수도 채납액 징수 및 관리(채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조치) 10. 상수도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 정리 11. 물품 및 비품관리 12. 계약업무처리(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일반회계) 13. 관급자재 구매공급 14. 지출원 사무처리(일반회계, 특별회계) 15. 직원봉급 및 수당지급 16. 지방채관리(지역개발기금, 농어촌발전기금, 한.재특 등) 17. 상수도 통계관리 18. 단수예고 실시 19.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 운영 20. 상수도사용량 검침 및 고지서 배부 21. 태백권 광역상수도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22. 물 절약사업 추진 23.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행 24.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장공사 추진 25. 급수공사 시행 26. 상수원 수원개발계획 수립 시행 27.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28. 수원지 시설환경 정비 및 관리 29.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30.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31.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추진 32. 상수도 관망도 관리 및 구역유량계 설치

사업소명	분장사무
	33. 상수도 이동수리반 운영
	34. 상수도 용급복구공사 시행
	35. 노후계량기 교체사업 추진
	36. 상수도 누수탐사업무 추진
	37. 상수도 블록화 사업 추진 및 관리
	38. 소화전 설치 및 유지관리
	39. 계량기보호통 이설공사 추진
	40. 마을상수도사업 계획수립 시행
	41.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및 관리
	42. 마을상수도 민가 및 폐지
	43. 전용상수도 및 샘터관리
	44. 저수조 및 다중이용건축물 급수관상태 관리
	45. 마을상수도, 샘터 수질검사 및 관리
	46.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업무 전반
	47. 지하수개발 이용신고 허가
	48. 지하수사용료 부과, 징수관리
	49.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
	50. 지하수 폐공처리 및 관리
	51. 불법지하수개발 단속 및 지도감독
	52. 하수도사업의 기획 및 조정
	53.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54. 하수종말처리장 및 관거 정비사업 계획 수립
	55.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추진
	56.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57. 마을하수도 건설사업 추진
	58. 생활민원하수도 준설 및 보수
	59. 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검사
	60. 하수도 점사용료, 원인지부담금 부과징수 관리
	61. 공공하수도 점검허가
	62.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63. 하수도 생활민원 처리
	64. 하수도사업 일반, 특별회계 운영
	65.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관리
	66. 양광수계기금 관리
	67. 하수도통계 관리
	68. 정수장 관리 및 운영

사업소명	분장사무
	69. 원, 정수 생산량 관리
	70. 취수장, 배수지, 가압장 운영관리
	71. 정수장 자동제어감시설비 운영 및 유지관리
	72. 정수장 시설물(전기, 기계) 개량 및 유지관리
	73. 정수장 소방시설 유지관리
	74. 전기, 기계시설 안전관리 사항
	75. 원수, 정수 수질검사 및 관리
	76. 정수장별 정수처리기준, 소독 등 관리
	77. 정수약품 선정 및 투입량 결정업무 추진
	78.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 및 관리
	79. 실험실 운영 및 기자재 관리
	80. 수질계측기유지 및 정도검사 관리
	81. 일반, 노후수도꼭지 및 급수과정별 수질 검사 및 관리
	82. 고압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3.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 및 수질홍보업무 추진
	84. 정수장 일일, 주간 수질시험 및 관리
	85. 기타 수질시험과 관련된 업무추진 읍면 상수도 기술지원, 유지보수 안전점검 사항
평생학습관	1. 평생학습관의 서무, 예산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 인사, 복무, 공인 관리 3. 부모와 함께 그림그리기대회 추진 4.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시책개발 추진 5. 평생학습관 재산 및 물품에 관한 사항 6. 평생학습관의 시설물 및 기자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헬스장, 도서실 운영에 관한 사항 8. 열린독서회 및 자원봉사자 운영 9. 여성취업정보 창구 운영 10. 평생학습관 사용자 및 사용료 징수사항 11. 공공근로 및 인턴관리 감독 12. 청사 환경정비 추진 13. 기타 평생학습관 관리운영에 관한사항 14. 교육운영 프로그램 개발 15. 문화, 취미교양교육 운영 16. 기술과목 자격증반 운영 17. 수강생 모집홍보 및 접수관리 18. 교원강좌 및 세미나 개최

사업소명	분장사무
	19. 이동 평생학습관 운영 20. 수강생 작품전시회 추진 21. 수강생 자녀 놀이방 운영 22. 직업 및 부업알선을 위한 여성상담 23. 평생학습교육추진 및 지원에 관한 업무전반 24. 평생학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5. 평생학습협의회 운영 26.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추진 27. 찾아가는 평생학습관 운영 28. 평생학습축제 및 세미나 운영 29. 평생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0. 평생학습결과 표준화 시범도시 운영에 관한 사항 31. 기타 평생학습과 관련된 소관이 불분명한 사무추진
내수면개발사업소	1. 내수면개발사업소의 사무, 예산, 응봉에 관한 사항 2. 내수면개발사업소 인사, 복무, 공인 관리 3. 어류생산, 판매계획 수립 및 홍보 4. 사육어종 유.무상분양, 방류지역 조사 5. 향토어종 및 회귀어종 연구개발 6. 향토어종 및 회귀어종 자원조성 및 보급 7. 사육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8. 어류 인공채란 및 종묘생산 9. 어종별 어병 치료 및 사후관리 10. 연어인공 부화 방류사업 11. 연어 포획장 시설관리 12. 양식어류 기술개발 13. 내수면양식어가 기술지도 14. 낚시터 운영 및 시설관리 15. 초당저수지 붕어낚시대회 지원 16. 민물고기전시관 운영관리 17. 내수면 자원개발 및 자원조성 18. 내수면 어업계 설립 및 지도관리 19. 내수면 어업면허, 허가, 신고에 관한 사무 20. 내수면 양어장 운영 및 지도 21. 내수면 어도시설 설치 및 관리 22. 기타 내수면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센터	1. 문화예술회관(대.. 소공연장, 전시실, 야외공연장, 광장) 운영관리

사업소명	분장사무
	2. 공연기획 및 공연홍보 관리 운영 3. 일반 사무 업무전반 4. 회계, 예산, 물품 관리 업무 5. 공연장 무대 기기운영 및 관리 6. 일반 기계 운영 관리 7. 전국문화예술연합회 업무전반 8. 공연장 무대조명시설 운영 관리 9. 소 내 일반 조명, 전기시설 운영관리 10. 공연장 무대음향시설 운영 관리 11. 공연장 영상음향시설 운영 관리 12. 소 내 일반 음향, 영상시설 운영 관리 13. 시설물 보안관리 14. 청사시설물 소방시설 관리운영 15. 청사시설물 냉.난방 관리운영 16. 남산 인공폭포 관리 17. 문화사랑 회원제 관리 운영 18. 대관허가 19. 초청공연 입장료 정산 20. 전시실 관리 운영 21. 전통혼례용품 관리 22. 광장 내 배수펌프장 시설물 관리 운영 23. 관광객 유치 및 홍보업무 추진 24. 전시물 관리 25. 입장권 제작 매표 관리 운영 26. 관광객 입장수입금 관리 27. 관광객 안내 및 안전사고 예방관리 28. 친절환 안내를 위한 관광도우미 운영 29. 박물관 운영관리 30. 청사시설물 소방시설 관리운영 31. 청사시설물 냉.난방 관리운영 32. 박물관 학예연구 업무전반 33. 향토문화사 기획 실행 34. 학술총서 제작 35. 사회교육 및 향토문화 홍보 36. 삼척시 문화행정 업무 지원 37. 소장 유물보관 보존처리 및 전시물 관리

사업소명	분장사무
	38. 민속향토사 관련조사 연구 학술단체 민간단체와 협조 39. 유물정보화 작업 40. 박물관 자료 간행물 제작 홍보물 배포
대이동굴관리소	1. 대이동굴관리소 행정의 종합조정 및 사무에관한 사항 2. 환선굴, 대금굴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부과 징수 3. 대이리군립공원지역 및 동굴·부대시설의 보호 유지관리 4. 입장권 및 예약업무 시스템 관리 5. 예산 및 회계 업무 6. 일반사무 및 복무관리 7. 매표소 입장권 매표 및 결산 8. 관광객 유치 및 안내 9. 주차장 관리 10. 기타 관리소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해양관광시설관리소	1. 해양레일바이크 체험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2. 입장권 및 예약업무 시스템 관리 3. 예산 및 회계 업무 4. 일반사무 및 복무관리 5. 매표소 입장권 매표 및 결산 6. 관광객 유치 및 안내 7. 주차장 관리 8. 포토존 운영 관리 9. 기타 관리소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10. 해신당공원, 황영조기념공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어촌민속전시관 시설물관리 12. 이사부사자공원 운영 및 시설물 유지 관리 13. 이사부 사자공원 회계 및 수입금 관리 14.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15. 장미공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16. 장미공원 바닥분수 운영 17. 장미공원내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18. 장미공원내 수목 관리

삼척시 조례·규칙 심의회(2014. 07. 09.)에서 의결된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2014년 7월 18일

삼척시 규칙 제457호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13.10.18, 2013. 11. 22, 2013.12. 31, 2014. 07. 18.>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준별 직급·직렬별 정원표 (제2조관련)

직종	직급	직렬	합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동
		총 계	852	440	12	104	89	68	91	48
정무직	계		1	1	-	-	-	-	-	-
	3급상당	시 장	1	1	-	-	-	-	-	-
일반직	계		821	436	12	78	88	68	91	48
	4급	소계	4	4	-	-	-	-	-	-
		행정	2	2						
		행정,기술	2	2						
	4~5급	소계	1	-		1				
		기술,보건,간호	1	-		1				
	5급	소계	47	24	3	2	6	2	6	4
		행정	11	9	1		1			
		녹지	1	1						
		해양수산	2	1			1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2	2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3	2			1			
		행정,시설	8	6			1	-	-	1
		행정,보건	1			1				
		행정,법정	1		1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농업,시설	2					1	-	1
		행정,사회복지,시설	2							2
		행정,시설,확에연구관	1				1			
		행정,시설,발전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행정,공업,환경,환경연구	1	1						
		행정,농업,녹지,보건	1						1	-
		행정,농업,녹지,시설	4						4	-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2					1	1	-
	6급	소계	190	105	3	16	16	16	26	8
		행정	55	39	2		5	3	6	-
		공업	1				1			
		농업	3	3						
		녹지	4	4						
		해양수산	3	3						
		보건	1			1				
		보건전료	6			6				
		시설	15	10			2	2	1	-
		방송통신	1	1						
		운전	3	2	1					
		행정,사무	10	7				2	1	-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12	5				2	1	4
		행정,공업	5	4			1			
		행정,농업	26	4			1	5	12	4
		행정,녹지	2	1			1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4	4						

직종	직급	직렬	합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동
		행정,시설	17	9			1	2	5	-
		시설관리,사무운영	1	1						
		공업,환경	1				1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	1				1			
		보건,의료기술	1			1				
		보건,간호	1			1				
		행정,공업,환경	1	1						
		행정,공업,시설	3	3						
		행정,농업,환경	2	2						
		행정,시설,시설관리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6			6				
		통신,전화상담,전기운영	1	1						
		건축,기계,열관리운영	1				1			
	7급	소계	229	128	3	29	23	15	22	9
		행정	70	45	3		10	3	2	7
		사무	5	5						
		전산	2	2						
		사회복지	13	5				4	2	2
		시서	1					1	-	0
		공업	8	6			2			
		농업	12	4				1	7	-
		녹지	3	3						
		해양수산	7	6			1			
		보건	7			7				
		의료기술	5			5				
		간호	6			6				
		환경	4	4						
		시설	24	18			1	2	3	-
		방송통신	2	2						
		간호조무	1			1				
		시설관리	6	3			3			
		운전	10	7		3				
		건축운영	1				1			
		통신운영	1	1						
		전기운영	3	1			2			
		기계운영	3	1		1	1			
		열관리운영	2	2						
		선박항해운영	-							
		농림운영	1			1				
		행정,사무	9	4				1	4	-
		행정,전산	1					1	-	-
		행정,사회복지	2	2						
		행정,농업	3	1					2	-
		행정,시설	3	1					2	-
		공업,보건	1				1			
		농업,수의	1	1						
		보건,간호	5			5				
		행정,공업,시설	3	3						
		행정,농업,환경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2					2		-
		건축,기계,열관리운영	1				1			
	8급	소계	227	113	3	25	22	22	26	16
		행정	73	45	1		3	6	9	9

직종	직급	직명	합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동
		사무	8	8						
		전산	1	1						
		사회복지	10	3				-	1	6
		사서	2					2	-	-
		공업	3				3			
		농업	4	4						
		농지	5	5						
		해양수산	1	1						
		보건	7			7				
		식품위생	1			1				
		의료기술	8			8				
		간호	4			4				
		환경	4	4						
		시설	19	9			4	2	4	-
		방송통신	1	1						
		시설관리	9	3	2	1	3			
		운전	17	5		1		4	7	-
		건축운영	2				2			
		통신운영	1	1						
		전파상당운영	1	1						
		전기운영	4	2			2			
		기계운영	7	1			2	2	2	-
		열관리운영	1				1			
		농림운영	1	1						
		사무운영	2	2						
		행정,세무	8	6					2	-
		행정,전산	2	1				1	-	-
		행정,사회복지	4	3				1	-	-
		행정,환경	1					1	-	-
		행정,농업	2	1				1	-	-
		행정,시설	4	2			1	-	-	1
		보건,간호	3			3				
		보건,환경	1	1						
		파견,기계운영	1	1						
		공업,농업,시설	1	1						
		건축,기계,열관리운영	1				1			
		농림운영,시설관리	1					1	-	-
		행정,농업,해양수산	1					-	1	-
		행정,농업,농지,시설	1					1	-	-
	9급	소계	120	61	-	5	19	13	11	11
		행정	41	22			6	3	2	8
		사무	1	1						
		전산	2	2						
		사회복지	16	9				-	4	3
		사서	1					1	-	-
		방호	2				1	-	1	-
		농업	4	2				1	1	-
		농지	2	2						
		해양수산	2	1				1	-	-
		의료기술	1			1				
		환경	2	2						
		시설	11	11			-			
		방재안전	1	1						

직종	직급	직명	합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방송통신	1	1						
		시설관리	5			1	3	1	-	-
		운전	7	1		2	1	1	2	-
		통신운영	1	1						
		전파상당운영	1	1						
		전기운영	2				1	1	-	-
		기계운영	2	-			1	1	-	-
		사무운영	6	3			3			
		행정,세무	2					1	1	-
		행정,사회복지	1	1						
		사회복지,환경	1					1	-	-
		보건,의료기술	1			1				
		전기,기계운영	1				1			
		건축,기계,열관리운영	1				1			
		행정,농업,농지,시설	2				1	1	-	-
	전문경력관	소계	3	1	-	-	2	-	-	-
	내근	공영기획홍보팀	1	-	-	-	1	-	-	-
		예비군중대장	1	1	-	-	-	-	-	-
		무대음향 관리	1	-	-	-	1	-	-	-
별정직	계		1	1	-	-	-	-	-	-
	6급상당	비서	1	1	-	-	-	-	-	-
연구직	계		4	2	-	1	1	-	-	-
	연구사	소계	4	2	-	1	1	-	-	-
		확역연구	2	1	-	-	1	-	-	-
		기록연구	1	1	-	-	-	-	-	-
		농업연구	1	-	-	1	-	-	-	-
지도직	계		25	-	-	25	-	-	-	-
	지도관	농촌지도	3	-	-	3	-	-	-	-
	지도사	농촌지도	22	-	-	22	-	-	-	-

2014년 제2회 삼척시 조례·규칙 심의회(2014. 06. 24.)에서 의결된 삼척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2014년 7월 18일

삼척시 규칙 제458호

삼척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

삼척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제7조제3항”을 “제8조제3항”으로, “제8조에 따른 보통우편”을 “제9조에 따른 일반우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7조제3항”을 “제8조제3항”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제4조에 따른”을 “제4조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별표를 참고하여”를 “법 제7조의 구분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주민등록번호”를 “납세자번호”로,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납세자번호”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소 : 법에 따른 송달지를 기준으로 기재한다.

제12조제2항제5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0호 단서 중 “「사무관리규정」 제21조제2항 및 제36조제3항”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제4항 및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전단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신고납부서”를 “납부서”로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제17조제1항”을 “제1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30호서식부터 별지 제33호서식까지”를 “별지 제40호서식부터 별지 제43호서식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21호 및 제26호서식”을 “별지 제22호서식”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별지 제11호서식의 OCR”를 “별지 제11호서식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전단 중 “제9호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0조”를 “법 제81조”로 한다.

제30조 중 “제19조제1항”을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시세환급금의 환부절차)”를 “(시세환급금의 지급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환급금지급필통지서”를 “지방세환급금지급확인통지서”로 한다.

제32조제1항제5호 중 “「신탁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제37조”를 “제38조”로 한다.

제36조 중 “제27조”를 “제28조”로 한다.

제38조 중 “제28조”를 “제29조”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질물요구”를 “요구”로 한다.

제46조제3항 중 “인정하는”을 각각 “인정되는”으로 한다.

제60조제4항 중 “제3항의 의해”를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78조의 제목 “(공탁)”을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제15조 제2항”을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제79조제1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0조제3항 중 “제79조”를 “제79조 및 제1항”로 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지 제68호서식의”를 “별지 제68호 서식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정리계획”을 “회생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인정하는”을 “인정되는”으로 한다.

제85조제1항 중 “제37조”를 “제38조”로 한다.

제99조제1항 중 “제46조”를 “제47조”로 한다.

제100조 중 “「지방세기본법」”을 “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금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4년 제2회 삼척시 조례·규칙 심의회(2014. 06. 24.)에서 의결된 삼척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2014년 7월 18일

삼척시 규칙 제459호

삼척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

삼척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확인하여 주민세”를 “확인하여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7호의2 서식의 주민세(균등분)”로 한다.

제5조 중 “확인하고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5호 서식의 주민세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를 “확인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2 서식의 주민세(균등분) 과세대장을 정리해야”로 한다.

제6조 중 “주민세”를 “주민세(균등분)”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주민세의”를 “주민세(재산분)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민세”를 “주민세(재산분)”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세”를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의 주민세(재산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민세”를 “주민세(재산분)”로 한다.

제9조 다음에 절 번호 및 절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3조부터 제15조 까지를 같은 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로 각각 하고, 제10조부터 제12조 까지를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로 각각 한다.

제3절 종업원분

제10조(종전의 제13조)제1항 중 “법 102조에 따라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이하 이 절에서 “지방소득세”라 한다)”를 “법 제84조의6에 따라 종업원분 주민세(이하 이 절에서는 “주민세(종업원분)”이라 한다)로,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은 “주민세(종업원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소득세”를 “주민세(종업원분)”로, “지방소득세의”를 “이를 제1항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소득세”를 “주민세(종업원분)”으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4조) 중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주민세(종업원분)”로, “법 102조”를 “법 제84조의6”으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소득세”를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의3서식인 주민세(종업원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새로이”를 “세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소득세”를 “주민세(종업원분)”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0조)앞의 절 제목 및 절 번호를 삭제한다.

제13조(종전의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각각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및 제96조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03조의5 및 제103조의7에 따라 양도소득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03조의23 및 103조의24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중전의 제11조) 중 “지방소득세(소득세분)”를 “지방소득세(소득분)”로 한다.

제15조(중전의 제12조) 중 “지방소득세(법인세분)”를 “법인지방소득세”로,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를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로,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를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로, “법 제91조제3항 및 제4항”을 “법 제100조, 제103조의9 및 제103조의27”로 한다.

제15조(중전의 제12조) 다음의 절 제목 및 절 번호를 삭제한다.

제17조제2항 중 “조례 제22조”를 “「삼척시 시세 조례」 제22조”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자동차세(소유)”를 “자동차세”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확인하여”를 “확인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의”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서식의 자동차세”를 “서식의 자동차세(주행)”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35조”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35조”로 한다.

제27조 중 “서식의 자동차세”를 “서식의 자동차세(주행)”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중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금 등에 대해서는 중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7호 서식]

범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															
OO연도 OO월분															
납세번호	납부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주소	과세표준	인분용	지방소득세	합계세액	수납금액	누계세액	과세표준	납기일자	수납일
범인등록번호															
원소제지															
합계	건수	전	지방소득세	가산세	합계	합계 : 364mm×257mm(일반용지 80g/m²)									

* 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OO연도 OO월분																
접수번호	신고일자	성명(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소득세	세율	지방소득세	납부일자	결재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담당자	담당	과장			
합계											364mm×257mm(일반용지 80g/m²)					

* 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OO연도 OO월분(납기 월 임부터 월 임까지)

과세 번호	집수 일자	성 명	주 소		소득세	관 할 세무서	세율	본세	가산세	계	결 제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납담자	과장

297mm x 210mm(일반용지 80g/㎡)

※ 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OO연도 OO월분(납기 월 임부터 월 임까지)

과세 번호	성 명	주 소		소득세	관 할 세무서	세율	본세	가산세	계	결의인	결 제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납담자	과장

297mm x 210mm(일반용지 80g/㎡)

※ 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4호 서식]

00연도 00월분

집수 일자	사업소명	납세 의무자			종업원 수	급여총액	세율	세액	납부일	결재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담당	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5호 서식]

00연도 00월분

과세 번호	사업소명	납세 의무자			종업원 수	급여총액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계	결의일	결재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담당	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x 210mm(일반용지 80g/㎡)

2014년 제2회 삼척시 조례·규칙 심의회(2014. 06. 24.)에서 의결된 삼척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2014년 7월 18일

삼척시 규칙 제460호

삼척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삼척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세무조사”라 함은”을 “세무조사”란”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범칙사건 조사”를 “법 제133조의2부터 제133조의14까지에 따라 행하는 지방세범칙조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조사책임자”라 함은”을 “조사책임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조사공무원”이라 함은 시장”을 “조사공무원”이란 삼척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일반조사”라 함은”을 “일반조사”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특별조사”라 함은”을 “특별조사”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직접조사”라 함은”을 “직접조사”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서면조사”라 함은”을 “서면조사”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전자신고”라 함은”을 “전자신고”란”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를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제2호 중 “10%이상”을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4호 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조세범칙조사”를 “지방세범칙사건조사”로 한다.

제25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지방세 서면 조사서

(지방세 납세자권리현장 제종)

		범인유형	주요 목적사업
○ 범인명 :	(인)	제조업 () 건설업 () 판매업 () 운송업 () 기타 ()	
○ 대표자 :			
○ 법인소재지 :			
○ 사업년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계 기 ~ 계 기)		
○ 작성자 :	(근무부서) (성명) (연) (전화)		
○ 제출일자 :	년 월 일		

삼척시장 귀하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에 따라 조사하는 것으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정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면 조사는 서면신고에 의한 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대해서는 첨부서류만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하시고, 첨부된 서류는 □내에 V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연도별 작성 [조사대상기간이 3년이면 사업연도별(3개년) 각각 작성] 및 각 서식 작성 시 삼척시 전체분을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후 보낼 곳 :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세무시청 세무과(세무조사부서)
 우편번호 : 245-701

※ 문의사항 전화 : (033) 570-3287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

○ 공통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건설업, 제조업, 기타별인 모두 해당)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본점 및 지점사업장)
-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무서에 신고한 신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감가상각명세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 ※ 법인소유자산(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 계정별 원장 및 보조장
- 도급공사원가명세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 각 사업연도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사업장별 신고내역서

※ 첨부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서 식 목 차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2. 주민세(재산분) 신고 명세서
3. 주민세(종업원분) 명세서

※ 서식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작성요령

-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에 대한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 : 「지방세법」 제87조(납세지 등) 참조
- 매월별 작성하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또는 원천세 예수금장부 등에 의거 작성

① 소득세 구분란 : 월별 소득세징수액 집계표에 기재된 소득구분별

원천징수한 금액 기재

기 타 : “예” 인정상여, 인정배당, 지상배당,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119조(양도소득) 등

법인세법 98조(외국법인)에 따른 법인세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대상이므로 원천징수시 기재

② 산출지방소득세 : 합계(과세표준액) × 「지방세법」 표준세율

주)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사업연도	사업장소재지	강원도 산책시 읍·면·동·리 번지 호	사업장명
------	--------	----------------------	------

(단위 : 원)

구분 월별	① 소 득 세 납 부 액				합 계 (과세표준액)	② 산 출 지방소득세	기납부 세 액	납부 일자
	근로 퇴직	배당	이자	사업 소득 제98조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말 정산								
합계								

※ 사업장이 많은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부사하여 사용)

※ 서식 2. 주민세(재산분)신고 명세서(삼척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 사업장면적 330㎡ 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1㎡ 이상은 제곱미터당 250원에 해당하는 세액 납부여부 기재

①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

② 정 당 세 액 : 과세면적 × 250원

2. 주민세(재산분) 신고 명세서(삼척시 소재 사업장)

사업 연도	사업장명	소재지	사업 개시일	연면적 (㎡)	①비 과 세 면 적					파세면적 ⑤(㉔-㉕)	기타부 세 액 (㉔)	남부 일차 ⑦(㉔-㉕)	
					소계 (㉔)	구내		기타	기숙사				②정당세액 (㉕)
						의용	식음						

(단위 : ㎡, 원)

※ 서식 3. 주민세(종업원분) 명세서(삼척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 ① 근로소득 :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기재
- ② 비과세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를 기재
- ③ 종업원수 : 급여의 지급여부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위임계약 또는 고용계약에 의하여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 수시 고용인용의 경우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 인원을 합한 인원수로 산정
- ④ 산출세액 : ③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㉔)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

3. 주민세(종업원분) 명세서(삼척시 소재 사업장)

< 사업연도 : , 사업장명 : >

구분	월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2월 (정산)
① 근로소득														
② 비과세소득														
③ 종업원수														
④ 산출세액														
기납부액														
납부일자														
과세표준														
⑤=(㉑-㉒)														
급여지급일														
⑥×(0.5/100)														
기납부액														
납부일자														

(단위 : 원)

※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잠급, 부리후생비등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 하여야 함

삼척시 조례·규칙 심의회(2014. 06. 11.)에서 의결된 삼척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2014년 7월 18일

삼척시 규칙 제461호

삼척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삼척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지방재정법」 제77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와 다른 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제3조제1항제2호 중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를 “시”로 한다.

제4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금고지정 업무담당자이고 서기는 세입업무담당자가 된다.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금고는 상·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같은 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정되어 있는 금고의 경우에는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규칙에 따라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별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3조제2항 관련)

I. 총괄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 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2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10)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 (안정성,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6점) - 원화유동성비율 (유동성, 2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관할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로 별도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평가하므로 해당 관할기관 세부 평가기준을 준용함 * 금융감독원 인정정보통신망 관리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전자기준에서 참조하고 인정되는 경우 반영됨	(22)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7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	
	나. 공공예금 적용금리	(5)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4)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2)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21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 금고지점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5)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9)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	
4. 금고업무관리능력		21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7)	
	라. 금고업무 조직,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2)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		9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	
	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시와의 협력사업' 평가는 자체 평가 기준에 따라 운영하되, 평가기준은 협력사업 등급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마련	(4)	

II. 세부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방법

i. 일반원칙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 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10%에서 최소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는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다.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에 있어, 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에는 세부항목 추가는 가능하나 기존 세부항목(가,나,다)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으며, 항목 5(지역사회기여 및 시와 협력)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으며, 또한 항목 5와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다.

ii.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2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0점)

1) 국외 평가기관 (6점)

- 대표적 국제 신용조사기관인 무디스(Moody's), 에스앤피(S&P), 피치(FITCH) 중 해당 금융기관이 제출한 조사기관의 평가서의 등급기준에 따라 평가

배 점	등 급 별 배 점				비 고
	최고등급	상위등급	보통등급	요주위등급	
6.0점	6.0점	5.4점	4.8점	4.2점	

2) 국내 평가기관 (4점)

- 대표적 국내 신용조사기관인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중 해당 금융기관이 제출한 평가서의 등급기준에 따라 평가

배점	등급별 배점				비고
	최고등급	상위등급	보통등급	요주위등급	
4.0점	4.0점	3.6점	3.2점	2.8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2점)

-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공시자료에 따라 평가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자료와 비교·확인(배점등급은 금융감독원 일반은행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적용)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 (신협 농수신협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1) BIS 자기자본 비율(안정성, 7점)

배점	비율별 배점					비고
	10%이상	9%이상~10%미만	8%이상~9%미만	7%이상~8%미만	7%미만	
7.0점	7.0점	6.3점	5.6점	4.9점	4.2점	

2)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7점)

배점	비율별 배점					비고
	2.0%이하	2.5%미만	2.5%이상~3.0%미만	3.0%이상~3.5%미만	3.5%이상	
7.0점	7.0점	6.3점	5.6점	4.9점	4.2점	

3)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6점)

배점	비율별 배점					비고
	20%이상	16%이상~20%미만	12%이상~16%미만	8%이상~12%미만	8%미만	
6.0점	6.0점	5.4점	4.8점	4.2점	3.6점	

4) 원화유동성비율 (유동성, 2점)

배점	비율별 배점					비고
	100%이상	90%이상~100%미만	80%이상~90%미만	70%이상~80%미만	70%미만	
2.0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7점)

- 금융기관이 제안한 정기예금의 금리수준에 따라 예금종류 및 기간별로 별도 배점하여 평균함
- 각 금융기관에서 제시한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를 비교하여 순위별로 배점
- 가장 높은 금리가 1순위이며 5순위 이하는 순위에 관계없이 동점처리하며 제안 금리가 동일한 경우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배점
- 대출금리의 경우 각 금융기관에서 제시한 금리를 기간별(1년 이하, 1년 초과)로 비교하여 합한 점수를 순위별로 배점하되, 가장 낮은 대출금리가 1순위이며 5순위 이하는 순위에 관계없이 동점처리하며 제안 금리가 동일한 경우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배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점)

배점	순위별 배점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0점	6.0점	5.7점	5.4점	5.1점	4.8점	

나. 공급예금 적용금리 (5점)

배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5.0점	5.0점	4.75점	4.50점	4.25점	4.0점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4점)

배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4.0점	4.0점	3.8점	3.6점	3.4점	3.2점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2점)

배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2.0점	2.0점	1.9점	1.8점	1.7점	1.6점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21점)

-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성을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비교·평가 후 배점

가. 관내 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5점)

-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입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제안(공고)일 현재 삼척시 관내 점포수(통합전산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동일 점포로 인정)를 비교·평가하여 배점

배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5.0점	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나. 지방 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9점)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를 포함한 전년도(전년도 수납처리실적이 없는 금융기관은 최근 4년 중 최근년도에 가장 가까운 1년도 처리실적) 삼척시 세입금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실적에 따라 배점

배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9.0점	9.0점	8.1점	7.2점	6.3점	5.4점	

다. 지방 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며 5순위 이하의 순위에 관계없이 동점 처리

배 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7.0점	7.0점	6.3점	5.6점	4.9점	4.2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1점)

- 금고관리능력을 금융기관이 제출한 실적 및 계획서와 세입부서의 증빙자료를 상호 비교하여 평가 후 배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점)

- 지방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Cash-flow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배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5.0점	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점)

- 최근 3년 전부터 제안(공고)일 현재까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수납·지출대행점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며 5순위 이하는 순위에 관계없이 동점 처리(제안서 검토)

배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7.0점	7.0점	6.3점	5.6점	4.9점	4.2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7점)

- 금고 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며 5순위 이하는 순위에 관계없이 동점 처리(제안서 검토)

배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7.0점	7.0점	6.3점	5.6점	4.9점	4.2점	

라. 금고업무 전담조직 운영계획,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2점)

- 금고업무 전담 조직 운영계획을 금융기관별 비교·평가한 후 순위에 따라 배점하며 5순위 이하는 순위에 관계없이 동점 처리
- 인력배치에 대한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제안서 검토)

배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2.0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9점)

-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시와의 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였는지를 금융기관이 제출한 증빙자료 및 계획서를 비교·평가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

-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지역사회 경제활성화, 재해구호활동, 인재육성 및 장학사업, 문화관광스포츠, 의료사업, 사회복지등 지역사회를 위하여 기여한 실적을 비교 평가한 후 배점(제안서 검토)

배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5.0점	5.0점	4.75점	4.50점	4.25점	4.0점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4점)

- 금융기관이 금고 약정기간 중 추진할 계획을 비교·평가한 후 투자금액에 따라 비교 평가한 후 배점(제안서 검토)

배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4.0점	4.0점	3.8점	3.6점	3.4점	3.2점	

6. 위에서 정한 각 항목별 배점의 범위 안에서 세세항목 및 배점기준, 착안 사항 등은 시장 또는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014년 제2회 삼척시 조례·규칙 심의회(2014. 06. 24.)에서 의결된 삼척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2014년 7월 18일

삼척시 규칙 제462호

삼척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삼척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삼척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를 「삼척시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수리반”을 “농기계순회수리반”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리소”를 “농기계순회수리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4년 제2회 삼척시 조례·규칙 심의회(2014. 06. 24.)에서 의결된 삼척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2014년 7월 18일

삼척시 규칙 제463호

삼척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삼척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삼척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삼척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삼척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를 “삼척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공고하여야”를 각각 “고시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1만원씩 감액”을 “2분의 1을 감면”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호 내지 3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농기계가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를 “농기계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범위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5호”를 “제7조제3항제1호 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제11조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 중 “「삼척시재무회계규칙」 및 「삼척시세부과징수규칙」”을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 및 「삼척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등 시행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삼척시장

2014년 07월 18일

삼척시 훈령 제239호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등 시행 규정
일부개정규정**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등 시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삼척시 공문서 배부번호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배부처기관별 기관번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배부처기관별	기관번호
시·과	노(1-24) 기획감사실 1, 문화정보실 2, 비례전략과 3, 에너지산업과 4, 자원개발과 5, 복화산업과 6, 자치행정과 7, 세무과 8, 회계과 9, 주민생활지원과 10, 사회복지과 11, 민원봉사과 12, 환경보호과 13, 관광정책과 14, 지역경제과 15, 안전총괄과 16, 농업정책과 17, 축산과 18, 산림녹지과 19, 전천과 20, 도시디자인과 21, 교통행정과 22, 건축과 23, 해양수산과 24
읍·면·동·출장소	도(1-13) 도계읍 1, 원덕읍 2, 근덕면 3, 하장면 4, 노곡면 5, 미로면 6, 가곡면 7, 신기면 8, 남양동 9, 성내동 10, 교동 11, 정리동 12, 임원출장소 13
사업소	로(1-12) 농촌지원과 1, 교육연구과 2, 보건정책과 3, 건강증진과 4, 상하수도사업소 5, 평생학습관 6, 내수면개발사업소 7, 문화예술센터 8, 대이동물류관리소 9, 해양관광시설관리소 10, 도계보건출장소 11, 원덕보건출장소 12

- ② 삼척시 기획조정협의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제건설국장, 지역개발사업단장”을 “경제건설국장”으로, “총무과장”을 “자원개발과장, 자치행정과장”으로, “도시과장”을 “도시디자인과장”으로 한다.
- ③ 삼척시 읍·면·동 행정실적 심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 ④ 삼척시 기록물평가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 ⑤ 삼척시 행정자료실 운영 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진단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총무과장에게 구입요구하고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에게 구입요구하고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 ⑥ 삼척시 행정실명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총무과장”을 각각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 ⑦ 삼척시 행정관리 통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 ⑧ 삼척시 청원경찰 징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 ⑨ 삼척시 공무원외여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 ⑩ 삼척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 ⑪ 삼척시 부동산 권리의무증서 보관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 ⑫ 삼척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 ⑬ 삼척시 환경경영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 ⑭ 삼척시 전자문서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 ⑮ 삼척시 민방공경보단말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보자원정책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정보자원정책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정보자원정책과장”을 각각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정보자원정책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정보자원정책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자원정책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자원정책과장”을 각각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자원정책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본문 중 “정보자원정책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정보자원정책과장”을 각각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3항 중 “정보자원정책과장”을 각각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정보자원정책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자원정책과장”을 각각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8조 중 “정보자원정책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별표 3 서식 결재란 중 “정보자원정책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 ⑯ 삼척시 제해대책본부 설치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국장, 산업건설국장”을 “자치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산업건설국장”을 “경

- 제건설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 ⑰ 삼척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도시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며, “도시과장”을 “도시디자인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제건설국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 ⑱ 삼척시 사고대책본부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제5호, 제10호 및 제1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각각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 ⑲ 삼척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 ⑳ 삼척시 기업투자유치 성과금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투자지원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래전략국장
 2. 자치행정국장
 5. 자치행정과장
- ㉑ 삼척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5호 중 “총무과”를 각각 “자치행정과”로 한다.
제50조제2항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

[별표]

기관별 담당의 명칭 및 직렬·직급 (제4조 관련)

부서별		담당명칭	직렬 및 직급	
계		185 명		
의회 (2)	의회사무과 (2)	의사담당	지방행정주사	
		의정담당	지방행정주사	
본청 (101)	기획감사실 (4)	기획담당	지방행정주사	
		예산담당	지방행정주사	
		감사담당	지방행정주사	
		법무행정담당	지방행정주사	
	문화예술보실 (4)	문화예술담당	지방행정주사	
		공보담당	지방행정주사	
		체육진흥담당	지방행정주사	
		체육시설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미래전략국 (12)	미래전략과 (3)	총괄기획담당	지방행정주사
			산업개발담당	지방시설주사
			전략시설담당	지방행정주사
		에너지산업과 (3)	정책기획담당	지방행정주사
			시설지원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사업지원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
	자원개발과 (3)	개발기획담당	지방행정주사	
		지역개발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시설담당		지방시설주사		
문화산업과 (3)	산업지원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		
	문화산업담당	지방시설주사		
	지역육성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자치행정국 (40)	자치행정과 (6)	사무담당	지방행정주사
	자치행정담당		지방행정주사	
	인사담당		지방행정주사	
	후생복지담당		지방행정주사	
	지식정보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전산주사	
	정보통신담당		지방방송통신주사	
	세무과 (6)	세정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부서별		담당명칭	직렬 및 직급
		징수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세입관리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세무조사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재산세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과표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회계과 (4)	경리담당	지방행정주사
		계약관리담당	지방행정주사
		계약실사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재산관리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주민생활지원과 (4)	복지기획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희망복지지원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통합조사관리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생활보장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사회복지과 (6)	경로복지담당
		여성가족담당	지방행정주사
		아동보육담당	지방행정주사
		드림스타트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청소년담당	지방행정주사
		장애인복지담당	지방행정주사
	민원봉사과 (6)	민원담당	지방행정주사
		가족관계등록담당	지방행정주사
		토지관리담당	지방행정주사
		지적담당	지방시설주사
		지적정보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환경보훈과 (5)	공간정보담당	지방행정주사
		환경관리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
		환경자도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
		생활환경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
오수관리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	

부서별		담당명칭	직렬 및 직급
경제건설국 (41)	관광정책과 (3)	환경시설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
		관광기획담당	지방행정주사
		관광홍보담당	지방행정주사
		관광개발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지역경제과 (6)	지역경제담당	지방행정주사
		기업지원담당	지방행정주사
		공유지원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
		에너지관리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
		일자리지원담당	지방행정주사
		규제개혁담당	지방행정주사
		안전총괄과 (4)	안전총괄담당
	북구지원담당	지방시설주사	
	안전도시담당	지방행정주사	
	민방위담당	지방행정주사	
	농업정책과 (4)	농정기획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농산지원담당	지방농업주사
		환경농업담당	지방농업주사
		유형현대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축산과 (3)	축경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경영축산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축산위생담당	지방농업주사
	산림복지과 (5)	자원조성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복지주사
		산림보호담당	지방복지주사
		휴양복지담당	지방복지주사
		산림경영담당	지방복지주사
		산림방지담당	지방복지주사
	건설과 (4)	건설행정담당	지방행정주사
		토목담당	지방시설주사

부서별		담당명칭	직렬 및 직급		
	도시디자인과 (4)	하천담당	지방시설주사		
		기반조성담당	지방시설주사		
		도시행정담당	지방행정주사		
		도시계획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도시개발담당	지방시설주사		
		도시디자인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교통행정과 (3)	교통행정담당	지방행정주사		
		교통지도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		
		차량등록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		
		건축과 (4)	건축행정담당	지방행정주사	
	건축담당	지방시설주사			
	주택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건축물관리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해양수산과 (4)	해양행정담당	지방해양수산주사		
		수산진흥담당	지방해양수산주사		
		연안개발담당	지방해양수산주사		
		연안관리담당	지방행정주사		
	직속 기관 (17)	농업 기술 센터 (7)	농촌지원과 (4)	지원기획담당	지방농촌지도사
			농촌지원담당	지방농촌지도사	
			기술지도담당	지방농촌지도사	
서부지소장			지방농촌지도사		
교육연구과 (3)		운영지원담당	지방농촌지도사		
		교육경영담당	지방농촌지도사		
		연구개발담당	지방농촌지도사		
보건소 (10)	보건정책과 (6)	보건행정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보건주사		
		위생담당	지방보건주사		
		예방의약담당	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의료기술주사 또는 지방간호주사		
		진료지원담당	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의료기술주사		

부서별		담당명칭	직렬 및 직급
	건강증진과 (4)	도계보건출장소장	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의료기술주사 또는 지방간호주사
		원덕보건출장소장	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의료기술주사 또는 지방간호주사
		건강증진담당	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간호주사
		가족건강담당	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의료기술주사 또는 지방간호주사
		방문보건담당	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의료기술주사 또는 지방간호주사
		건강관리담당	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의료기술주사 또는 지방간호주사
		사업소 (15)	상하수도사업소 (6)
		수도시설담당	지방시설주사
		마을상수도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하수담당	지방시설주사
		시설운영담당	지방공립주사
		수질관리담당	지방공업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
	평생학습관 (2)	학습기획담당	지방행정주사
		학습운영담당	지방행정주사
	내수민개발사업소 (1)	생선담당	지방해양수산주사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사
	문화예술센터 (2)	문화예술회관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공립주사
		박물관담당	지방학예연구사
	대이동유통관리소 (1)	관리담당	지방행정주사
	해양관광시설관리소 (3)	레지담당	지방행정주사
		전시공원1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복지주사
		전시공원2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읍면동 (50)	도계읍 (9)	총무담당	지방행정주사
		재무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주민생활지원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민원담당	지방행정주사
		환경담당	지방행정주사
		산업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건설담당	지방시설주사
		도시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부서별		담당명칭	직렬 및 직급
	원덕읍 (7)	수도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총무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재무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주민생활지원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민원담당	지방행정주사
		산업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건설담당	지방시설주사
	원천출장소장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근덕면 (6)	총무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재무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주민생활지원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민원담당	지방행정주사
		산업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개발담당	지방시설주사
허장면 (4)	총무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주민생활지원담당	지방행정주사	
	산업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개발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노곡면 (4)	총무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주민생활지원담당	지방행정주사	
	산업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개발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미로면 (4)	총무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주민생활지원담당	지방행정주사	
	산업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개발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가곡면 (4)	총무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주민생활지원담당	지방행정주사	
	산업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부서명	담당명칭	직렬 및 직급
신기면 (4)	개발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총무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주민생활지원담당	지방행정주사
	산업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개발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남양동 (2)	행정민원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주민생활지원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사회복지주사
성내동 (2)	행정민원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주민생활지원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사회복지주사
교동 (2)	행정민원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주민생활지원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사회복지주사
정리동 (2)	행정민원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주민생활지원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삼척시장

2014년 07월 18일

삼척시 훈령 제240호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별표 1]

삼척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총괄)

직종	직급	직명	합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동
		총계	852	440	12	104	89	68	91	48
정무직	계		1	1	-	-	-	-	-	-
	3급상급	시장	1	1	-	-	-	-	-	-
일반직	계		821	438	12	78	88	68	91	48
	4급	소계	4	4	-	-	-	-	-	-
		행정	2	2						
		행정,기술	2	2						
	4~5급	소계	1	-		1				
		기술,보건,간호	1	-		1				
	5급	소계	47	24	3	2	6	2	6	4
		행정	11	9	1		1			
		복지	1	1						
		해양수산	2	1			1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2	2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3	2			1			
		행정,시설	8	6			1	-	-	1
		행정,보건	1			1				
		행정,별정	1		1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농업,시설	2					1	-	1
		행정,사회복지,시설	2					-	-	2
		행정,시설,확에연구관	1				1			
		행정,시설,별정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행정,공업,환경,환경연구	1	1						
		행정,농업,복지,보건	1					-	1	-
		행정,농업,복지,시설	4					-	4	-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2					1	1	-
	6급	소계	190	105	3	16	16	1	26	8
		행정	55	39	2		5	3	6	-
		공업	1				1			
		농업	3	3						
		복지	4	4						
		해양수산	3	3						
		보건	1			1				
		보건진료	6			6				
		시설	15	10			2	2	1	-
		방송통신	1	1						
		운전	3	2	1					
		행정,세무	10	7				2	1	-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12	5				2	1	4
		행정,공업	5	4			1			
		행정,농업	26	4			1	5	12	4
		행정,복지	2	1			1			

■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별표 1]

삼척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총괄)

직종	직급	직명	합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동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4	4						
		행정,시설	17	9			1	2	5	-
		시설관리,사무운영	1	1						
		공업,환경	1				1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	1				1			
		보건,의료기술	1			1				
		보건,간호	1			1				
		행정,공업,환경	1	1						
		행정,공업,시설	3	3						
		행정,농업,환경	2	2						
		행정,시설,시설관리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6			6				
		통신,전회상담,전기운영	1	1						
		건축,기계,열관리운영	1				1			
	7급	소계	229	128	3	29	23	15	22	9
		행정	70	45	3		10	3	2	7
		세무	5	5						
		전산	2	2						
		사회복지	13	5				4	2	2
		사서	1					1	-	0
		공업	8	6			2			
		농업	12	4				1	7	-
		복지	3	3						
		해양수산	7	6			1			
		보건	7			7				
		의료기술	5			5				
		간호	6			6				
		환경	4	4						
		시설	24	18			1	2	3	-
		방송통신	2	2						
		간호조무	1			1				
		시설관리	6	3			3			
		운전	10	7		3				
		건축운영	1				1			
		통신운영	1	1						
		전기운영	3	1			2			
		기계운영	3	1		1	1			
		열관리운영	2	2						
		선박항해운영	-	-						
		농림운영	1			1				
		행정,세무	9	4				1	4	-
		행정,전산	1					1	-	-
		행정,사회복지	2	2						
		행정,농업	3	1				-	2	-
		행정,시설	3	1				-	2	-

■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별표 1]

삼척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총괄)

직종	직급	직명	합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동	
	8급	공업,보건	1				1				
		농업,수위	1	1							
		보건,간호	5			5					
		행정,공업,시설	3	3							
		행정,농업,환경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2						2	-	-
		건축,기계,열관리운영	1					1			
		소계	227	113	3	25	22	22	22	26	16
		행정	73	45	1		3		6	9	9
		세무	8	8							
	전산	1	1								
	사회복지	10	3					-	1	6	
	사서	2						2	-	-	
	공업	3					3				
	농업	4	4								
	녹지	5	5								
	해양수산	1	1								
	보건	7				7					
	식품위생	1				1					
	의료기술	8				8					
	간호	4				4					
	환경	4	4								
	시설	19	9				4	2	4	-	
	방송통신	1	1								
	시설관리	9	3	2	1	3					
	운전	17	6			1		4	7	-	
	건축운영	2					2				
	통신운영	1	1								
	전화상담운영	1	1								
	전기운영	4	2				2				
	기계운영	7	1				2	2	2	-	
	열관리운영	1					1				
	농림운영	1	1								
	사무운영	2	2								
	행정,세무	8	6						2	-	
	행정,전산	2	1						1	-	
	행정,사회복지	4	3						1	-	
	행정,환경	1							1	-	
	행정,농업	2	1						1	-	
	행정,시설	4	2				1		-	1	
	보건,간호	3				3					
	보건,환경	1	1								
	화공,기계운영	1	1								
공업,농업,시설	1	1									
건축,기계,열관리운영	1					1					
농림운영,시설관리	1						1				

■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별표 1]

삼척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총괄)

직종	직급	직명	합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동		
	9급	행정,농업,해양수산	1					-	1	-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	-		
		소계	120	61	-	5	19	13	11	11		
		행정	41	22				6	3	2	8	
		세무	1	1								
		전산	2	2								
		사회복지	16	9					-	4	3	
		사서	1						1	-	-	
		방호	2					1	-	1	-	
		농업	4	2					1	1	-	
		녹지	2	2								
		해양수산	2	1					1	-	-	
		의료기술	1					1				
		환경	2	2								
		시설	11	11					-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1	1								
		시설관리	5					1	3	1	-	
		운전	7	1				2	1	1	2	
		통신운영	1	1								
		전화상담운영	1	1								
		전기운영	2						1	1	-	
		기계운영	2	-					1	1	-	
		사무운영	6	3					3			
		행정,세무	2							1	1	
		행정,사회복지	1	1								
		사회복지,환경	1							1	-	
		보건,의료기술	1					1				
		전기,기계운영	1						1			
		건축,기계,열관리운영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2							1	1	
		소계	3	1	-	-	-	2	-	-	-	
		전문경력관										
		나관										
			공인가획홍보원	1	-	-	-	1	-	-	-	
			에비군중대장	1	1	-	-	-	-	-	-	
			무대올향	1	-	-	-	1	-	-	-	
	별정직	계		1	1	-	-	-	-	-	-	
	연구직	6급상당	비서	1	1	-	-	-	-	-	-	
		계		4	2	-	1	1	-	-	-	
		연구사	소계	4	2	-	1	1	-	-	-	
			학예연구	2	1	-	-	1	-	-	-	
			기획연구	1	1	-	-	-	-	-	-	
	농업연구	1	-	-	1	-	-	-	-			
지도직	계		25	-	-	25	-	-	-	-		
	지도관	농촌지도	3	-	-	3	-	-	-	-		
	지도사	농촌지도	22	-	-	22	-	-	-	-		

■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별표 3]

삼척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의회)

직종	직급	직명	의회사무과	비고
총계			12	
일반직	계		12	
	5급	소계	3	
		행정	1	
		행정,법정	1	
	6급	소계	3	
		행정	2	
		운전	1	
	7급	소계	3	
		행정	3	
		8급	소계	3
	행정	1		
	시설관리	2		

■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별표 4]

삼척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직속기관)

직종	직급	직명	합계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교육지원과	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총계			104	31	19	12	73	58	15	
일반직	계		78	5	5	-	73	68	15	
	4~5급	소계	1	-	-	-	1	1	-	
		4~5급	기술,보건,간호	1	-	-	-	1	1	-
		5급	소계	2	-	-	-	2	1	1
		행정,보건	1	-	-	-	1	1	-	
		보건,의료기술,간호	1	-	-	-	1	-	1	
	6급	소계	16	-	-	-	16	12	4	
		보건	1	-	-	-	1	1	-	
		보건진료	6	-	-	-	6	6	-	
		행정,보건	1	-	-	-	1	1	-	
		보건,의료기술	1	-	-	-	1	1	-	
		보건,간호	1	-	-	-	1	-	1	
		보건,의료기술,간호	6	-	-	-	6	3	3	
	7급	소계	29	3	3	-	26	23	3	
		보건	7	-	-	-	7	6	1	
의료기술		5	-	-	-	5	5	-		
	간호	6	-	-	-	6	6	-		
	간호조무	1	-	-	-	1	1	-		
	운전	3	1	1	-	2	2	-		
	보건,간호	5	-	-	-	5	3	2		
	기계운영	1	1	1	-	-	-	-		
	농림운영	1	1	1	-	-	-	-		
8급	소계	25	1	1	-	24	18	6		
	보건	7	-	-	-	7	6	1		
	식품위생	1	-	-	-	1	1	-		
	의료기술	8	-	-	-	8	7	1		
	간호	4	-	-	-	4	2	2		
	운전	1	-	-	-	1	1	-		
	시설관리	1	1	1	-	-	-	-		

삼척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직속기관)

직종	직급	직 별	합 계	농업기술센터 타	유형직기관 타	특별연구 과	보건 상	국립중앙 직급 타	간 타
	9급	보건, 간호	3	-	-	-	3	1	2
		소계	5	1	1	-	4	3	1
		의료기술	1	-	-	-	1	1	-
		운전	2	-	-	-	2	2	-
		시설관리	1	1	1	-	-	-	-
		보건, 의료기술	1	-	-	1	-	1	
연구직	계		1	1	-	1	-	-	
	연구사	농업연구	1	1	-	1	-	-	
지도직	계		25	25	14	11	-	-	
	지도관	농촌지도	3	3	2	1	-	-	
	지도사	농촌지도	22	22	12	10	-	-	

■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별표 5]

삼척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사업소)

직종	직급	직 별	합 계	삼 척 수 도 사 업 소	평 생 학 습 관	내 수 업 개 발 사 업 소	문 화 예 술 센 터	대 이 동 물 관 리 소	해 양 관 광 사 업 소 관 리 소
총 계			89	28	10	6	13	12	20
일반직	계		88	28	10	6	12	12	20
	6급	소계	6	1	1	1	1	1	1
		행정	1	-	1	-	-	-	-
	해양수산	1	-	-	1	-	-	-	
	행정, 농업	1	-	-	-	-	-	1	
	행정, 시설	1	-	-	-	-	-	1	
	행정, 공업, 시설	1	1	-	-	-	-	-	
	행정, 시설, 학예연구관	1	-	-	-	1	-	-	
	6급	소계	16	7	2	1	1	2	3
		행정	5	1	2	-	-	1	1
		공업	1	1	-	-	-	-	-
		시설	2	2	-	-	-	-	-
		행정, 공업	1	-	-	-	1	-	-
		행정, 농업	1	-	-	-	-	-	1
		행정, 복지	1	-	-	-	-	-	1
		행정, 시설	1	1	-	-	-	-	-
		공업, 환경	1	1	-	-	-	-	-
		행정, 시설, 시설관리	1	-	-	-	-	-	1
	해양수산, 해양수산연구	1	-	-	1	-	-	-	
	건축, 기계, 열관리운영	1	1	-	-	-	-	-	
	7급	소계	23	9	3	2	2	2	5
		행정	10	2	3	1	1	1	2
		공업	2	1	-	-	1	-	-
		해양수산	1	-	-	1	-	-	-
		시설	1	1	-	-	-	-	-
		시설관리	3	1	-	-	-	-	2
		건축운영	1	1	-	-	-	-	-
		전기운영	2	1	-	-	-	-	1
기계운영		1	-	-	-	-	1	-	
공업, 보건		1	1	-	-	-	-	-	
건축, 기계, 열관리운영	1	1	-	-	-	-	-		
8급	소계	22	8	3	-	3	5	3	
	행정	3	1	2	-	-	-	-	

직종	직급	직 별	합 계	도 계 읍	군 직 읍	(수 소 장 정 정원 인)	면 요 인	면 장 우	면 회 부	미 보 면	가 격 면	신 기 면	유 양 분	해 동 상	교 육	정 라 해
		시설	6	1	1	-	1	-	1	-	1	1	-	-	-	-
		운전	11	3	1	-	2	1	1	1	1	1	-	-	-	-
		기계운영	4	-	2	-	2	-	-	-	-	-	-	-	-	-
		행정,세무	2	-	-	-	-	1	1	-	-	-	-	-	-	-
		행정,전산	1	-	1	-	-	-	-	-	-	-	-	-	-	-
		행정,사회복지	1	1	-	-	-	-	-	-	-	-	-	-	-	-
		행정,환경	1	1	-	-	-	-	-	-	-	-	-	-	-	-
		행정,농업	1	-	1	-	-	-	-	-	-	-	-	-	-	-
		행정,시설	1	-	-	-	-	-	-	-	-	-	1	-	-	-
		행정,농업,해양수산	1	-	-	-	1	-	-	-	-	-	-	-	-	-
		행정,농업,복지,시설	1	1	-	-	-	-	-	-	-	-	-	-	-	-
		농업운영,시설관리	1	1	-	-	-	-	-	-	-	-	-	-	-	-
9급	소계		35	6	7	-	3	1	2	3	1	1	3	1	3	4
		행정	13	2	1	-	1	-	-	1	-	-	2	1	3	2
		사회복지	7	-	-	-	-	1	1	-	1	1	1	-	-	2
		사서	1	1	-	-	-	-	-	-	-	-	-	-	-	-
		방호	1	-	-	-	-	-	-	1	-	-	-	-	-	-
		농업	2	1	-	-	-	-	1	-	-	-	-	-	-	-
		해양수산	1	-	1	-	-	-	-	-	-	-	-	-	-	-
		시설관리	1	-	1	-	-	-	-	-	-	-	-	-	-	-
		운전	3	-	1	-	1	-	-	1	-	-	-	-	-	-
		전기운영	1	1	-	-	-	-	-	-	-	-	-	-	-	-
		기계운영	1	1	-	-	-	-	-	-	-	-	-	-	-	-
		행정,세무	2	-	1	-	1	-	-	-	-	-	-	-	-	-
		사회복지, 환경	1	-	1	-	-	-	-	-	-	-	-	-	-	-
		행정,농업,복지,시설	1	-	1	-	-	-	-	-	-	-	-	-	-	-

삼척시고시 제2014-96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

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및 삼척시 시세조례 제14조【도시지역 분 적용대상 지역의 고시】 규정에 의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5일

삼척시장

○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지역별	도시지역(m ²)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계	71,329,000	76,808,612	증)5,479,612	
동지역	51,899,000	51,950,300	증)51,300	미로면포함
도계읍	8,031,000	8,031,000	-	
원덕읍	3,307,000	7,953,284	증)4,646,284	LNG일반산업단지, 종합발전일반산업단지 및 추가변경고시지역 포함
근덕면	8,092,000	8,874,028	증)782,028	방재일반산업단지 및 추가변경고시지역 포함

삼척시고시 제2014-99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의거 우리시 건물
멸실 등에 따른 폐지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07. 18.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폐지:

순번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비고
1	강원도 삼척시 뒷나루길 298	20140718	건물 철거	
2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2154-35	20140718	건물 철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도시디자인과(☎570-3946~9)에 문
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등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삼척시 공고 제 2014-455호

삼척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 보상계획 공고

『삼척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 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 열람을 공고하오니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대상 토지 및 물건 조사 내용을 열람하시고 조사 내용에 이의 있으면서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07. 14.

삼척시장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명	사업위치	편입(보상)대상 내용	비고
삼척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	삼척시 도계읍 심포리산111-1일원	○ 토적 : 13필지 ○ 면적 : 61,524㎡ ○ 지장물 : 102건 ○ 분묘 : 7기	

2. 사업시행자 : 삼척시장

3. 사업기간 : 2012년 ~ 2015년

4. 대상 및 열람 내용

구분	소재지	지									합	
		267-3	268	271-1	272-2	276-6	276-21	276-22	276-35	277-9		신90-3
토지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심포리	선92-1	산111-1	산111-29								
	계	61,524㎡, 13[필지]										
건물	사업부지내 소재한 건물 등 일체 (붙임 1)											
분묘	사업부지내 소재한 분묘 등 일체 (붙임 1)											
지장물	사업부지내 소재한 지장물 등 일체 (붙임 1)											

※ 토지조사 및 물건조사의 세부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되며, 삼척시 홈페이지 시정홍보-입법/공고/고시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열람 및 이의 신청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2014. 07. 14 ~ 2012. 08. 14 (31일)

나. 열람장소 및 이의 제출 장소 : 삼척시청 지식개발과 사업개발 부서 ☎ (033) 570-4061, 570-0453

다. 이의신청 방법 : 삼척시청 지식개발과에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서식1. fax 033-570-3187)

6. 보상 시기 : 2014. 7월부터 (추후 통보)

가. 대상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감정평가 후 개별 통지

7.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 및 통지 등

- 보상액은 「같은법」 제68조에 의거 3인(「같은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강원도지사과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강원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보상액을 결정하여 보
상협의요청서를 개별적으로 통지하오며, 소유권 이전 동기 후 개인별로 현금(계좌입금)으로 지급합니
다.

나.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 안내

- 「같은법」 제68조 제2항에 의거 강원도지사과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란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등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삼척시장에게 감정평가업자 추천서[서식 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같은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강원도지사 추천은 「강원도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관한 지침 [예규 제752호(2014.1.1.)]」 제6조 제1호에 따라 토지 및 물건 보상금 총액이 10억원 이하로 추정되는 경우는 감정평가업자란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 보상절차 안내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감정평가의뢰 및 실시→보상액 산정→보상협의요청(보상금 개별통지)→보상협의(계약 체결)→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수용계결(협의불성립시)→공탁(협의불성립시)→이의제결 또는 소송

8. 기타사항

- 가. 본 공고와 관련하여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는 설계인정 동의 사유로 편입면적(수량)이 변경(편입제외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나. 세부 물건조서 열람결과 대상물건 또는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다른 경우 열람기간내에 이의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다.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내역, 보상금액, 보상절차, 보상협의 및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협의요청서와 함께 추후 보상 착수시기에 별도로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 라. 지장물 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개별통지는 현재 확인된 주소로 통지하게 되며, 주소, 거소 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조에 의거 본 공고로서 같음 합니다.
-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 지식개발과 사업개발 담당부서 ☎(033)570-4061,570-405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1]		이 의 신 청 서	
1. 사 일 명	삼척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		
2. 이의신청인	성 명(명칭)		
	주 소		
3. 이의신청 내용			
4. 기 타			
<p>「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4. . . .</p> <p>이의신청인 성 명 : (시명 또는 인)</p> <p>주 소 :</p> <p>전화번호 :</p> <p>삼 척 시 장 귀하</p>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식 2]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 추천감정평가업자 :									
○ 추 천 일 : 2014. . . .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성명 (납인)	전화번호	비고
					성명	주소			
<p>- 토지소유자는 추천서에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 후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p> <p>- 토지소유자가 사망하거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지적등본 등 관계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p>									

토 지 조 서

입권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권일면적(㎡)	비고
	총 계	13필지		171,363	61,524	
1	도계읍 심포리	산92-1	전	13,590	1,770	
2	도계읍 심포리	277-9	도	111	111	
3	도계읍 심포리	산111-29	원	5,166	5,166	
4	도계읍 심포리	산90-3	십	1,803	337	
5	도계읍 심포리	276-35	피	142	142	
6	도계읍 심포리	276-22	국	113	113	
7	도계읍 심포리	267-3	학	5,620	5,620	
8	도계읍 심포리	266	학	1,088	1,088	
9	도계읍 심포리	산111-1	임	125,303	44,452	
10	도계읍 심포리	272-2	전	2,506	2,506	
11	도계읍 심포리	271-1	대	152	152	
12	도계읍 심포리	276-6	대	8	8	
13	도계읍 심포리	276-21	대	69	69	

물 건 조 서

입권 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단위	수량	비고
	총 계	102건				
1	도계읍 심포리	층수층계소	목조임금	㎡	12.3	
		빔스	철제	㎡	16	
2	도계읍 심포리	차장식	벽돌스라브 위 너와	㎡	8.8	
		임두와	각피이프롬널엇갈	㎡	5.3	
		휴거실	각피이프롬널	㎡	24.4	
		삼고	죽로갈반	㎡	4.6	
		뒀단		식	1	
		봉신이전비	지받기 등	식	1	
		대추나무		4주	1	
		복숭아		주	3	
		주목		주	6	
		빛나무		주	1	
		참드릅		주	10	
		장미		주	2	
		복련		주	5	
		스나무		주	7	
		우궁차		주	1	
		포드나무		주	1	
3	도계읍 심포리	휴게소	각피이프롬널	㎡	16.6	
		비막포장	콘크리트	㎡	13.6	
		수도계량기		식	1	
		복련		주	1	
		향나무		주	1	
		개드릅		주	1	
4	도계읍 심포리	점포 및 주택	강양철골조판넬지붕	㎡	72	
		삼고(보원리식)	컨테이너	㎡	3.30	
		다용도실	철골강판	㎡	26.20	
		차장	피이프롬널 (비탈포장포함)	㎡	13.8	
		차장	피이프롬널 (비탈포장포함)	㎡	26.0	
		비막포장	콘크리트	㎡	616	
		석축	지연식 데갈기	㎡	84.5	
		옹벽	철근콘크리트	㎡	112	
		석축	타이어	㎡	56	
		빔스	피이프롬널 (비탈포장포함)	㎡	84	
		돌탑	외돌포함	2식	1	
		장승	h:1.2	식	3	

		숫대	목조(3*2.5)	식	3
		임강관	책자	식	4
		외장		7계	1
		석축	지연석 예설기	㎡	50
		주축		5주	1
		육면		주	2
		홍예화		주	1
		장미		주	4
		회양목		군	3
		지두나무		주	1
		무궁화		주	2
		초파나무		군	1
		소나무		주	3
		개나리	생울타리	m	4
		포도나무		주	3
		조경수		주	1
		연꽃나무		주	1
		사철나무		군	1
4-1		영양권	태백산식당	식	1
4-2		영양권	스원치맥센터	식	1
5	도계읍 신포리	주택	플렉스주택 (친환경주택)	㎡	96.0

분묘조서

묘역 번호	소재지	지번	묘역의 종류	구조 및 구역	수량	단위
	총 계	7기				
1	도계읍 신포리	276-1	유연묘장		1	기
			상식	지연석	1	석
2	도계읍 신포리	산111-1	무연묘장		1	기
3	도계읍 신포리	신90-4	유연묘장		1	기
			석축	지연석	22	㎡
			철암목		1	8주
			진달래		13	부
			개나리		1	군
			매실		1	주
			주목		2	주
			황나무		1	주
4	도계읍 신포리	신90-4	무연묘장		1	기
5	도계읍 신포리	산111-1	무연묘장		1	기
6	도계읍 신포리	산111-1	무연묘장		1	기
7	도계읍 신포리	산111-1	무연묘장		1	기